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15호

2017. 6. 22.(목)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예 규]

제720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4

[입법예고]

제2017-1442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제2017-1456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제2017-1457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제2017-146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제2017-1472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제2017-1473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고 시

제2017-216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

제2017-218호 금천구 독산동 금하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7

◆ 공 고

제2017-1405호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공고 27

제2017-141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공표 공고 30

제2017-1419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31

제2017-14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31

제2017-1428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32

제2017-1445호 『2017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33

제2017-1450호 2017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추천 공고 43

제2017-145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공표 44

제2017-145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
공고(국민대학교) 45

◆ 구 고 시

제2017-71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47

제2017-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북구) 50

제2017-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52
제2017-6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노원구)	56
제2017-61호 도시관리계획(독바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58
제2017-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59
제2017-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구로구)	61
제2017-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64
제2017-9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구로구)	65
제2017-9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구로구)	65
제2017-51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금천구)	66
제2017-66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초구)	66
제2017-8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68
제2017-85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71

◆ 구 공 고

제2017-53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열람 공고 (용산구)	79
제2017-5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성동구)	80
제2017-779호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분할 및 획지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성북구)	85
제2017-780호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성북구)	87
제2017-737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금천구)	89
제2017-63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결정(안) 열람 공고(동작구)	104
제2017-824호 도시관리계획(안:학교) 변경결정 열람공고(송파구)	106
제2017-806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강동구)	108

◆ 사업소고시

제2017-14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10
제2017-1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10
제2017-14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11
제2017-1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11

◆ 기 타

제2017-11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2
제2017-115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2

자 치 법 규

[예 규]

◆ 서울특별시예규 제720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신규”를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문 포함), 신규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및 10억원”을 “1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민간위탁사업, 일반계약”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일반계약”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약, 임대차계약”으로, “재무과”를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총사업비”로, “수익률의 적정성,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수익률”로, “지급금 적정성, 분쟁시”를 “지급금, 분쟁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탁비용, 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재산 취득·처분 :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대등 당사자로서 계약의 이행,

위험부담 등에 있어서의 형평 등 계약사항의 적정성 심사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차 : 임대차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계약해지 사유,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확보 등 계약사항의 적정성 심사

제6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시장”을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이 완료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재산 취득·처분계약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계약 체결 전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차계약 : 계약체결 전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 및 제6호의”를 “제2호”로, “심사 요청 사유서”를 “민간위탁 협약서안 비교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 제4호 심사대상 :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차계약 사업부서 체크리스트

제9조제1항제2호 중 “민간위탁사업 및 일반계약”을 “제1호 외의 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 재정담당관, 조직담당관 등에게”를 “장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련 부서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간투자사업 : 재정담당관
2. 민간위탁사업 : 조직담당관

제10조제2항 중 “장, 재정담당관, 조직담당관 등”을 “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계약(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1. 사 업 명	0000					2. 주관부서			000과			
3. 구 분	민간 투자 사업		민간 위탁 사업	신규		공유재산	취득		임대차		기타	
				재계약			처분					
				재위탁								
4. 사업개요	○ 추진경위 - - - ○ 현황 - - - ○ 사업내용 - - -											
5. 사 업 비	000백만원 (금년도 사업비 : 000백만원)					6. 사업기간		0년 ('14.1~)				
7. 근거법령 등	(계약추진의 근거법령 및 추진근거 등)											
8. 사전 절차 이행여부	(법·제도상 규정된 사전절차 이행여부 모두 기재)											
9. 계약의 주된 내용	(핵심요소나 특수한 내용 위주로 상세히 작성)											
10. 주요 심사 요청 내용	(계약의 법률적·재무적 주요 이슈사항 및 계약심사단에서 주로 검토해야 할 대상에 대한 기재)											
11. 향후계획	(향후 진행절차나 계획을 명시)											

※ 본 서식은 ①민간투자사업, ②민간위탁사업, ③ 공유재산 취득·처분계약, ④ 임대차계약등 모든 계약(협약)에 적용

[별지 제2호서식]

민간위탁 협약서안 비교표

표준협약서안(시설형, 사무형)	본 협약서(안)	변경사유
제○조 () ①----- ②----- ③-----	※ 예시 ① (좌동) ② ----- ③ (삭제)	
제○조 () ①----- ②----- ③-----		
제○조 () ①----- ②----- ③-----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계약 사업부서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사항	점검 내용 및 방법	해당 유무
1	권리순위관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설정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의 갑구, 을구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시점 : 계약시, 중도금, 잔금 지급시	Y/N □□
2	미납 세금 확인	미납국세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원 요청, 지방세도 동일한 절차에 의거 확인 ※ 임대인이 미납 세금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차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	Y/N □□
3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인	- 임차주택에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현황 확인 - 선순위 보증금 총액 확인	Y/N □□
4	임차물건에 대한 적정 시세 확인	- 부동산의 거래실례가 등을 조사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지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은 임차물건의 적정 시세 확인을 위해 임차거래실례가격과 매매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한 다음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거래실례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Y/N □□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내용의 정확성 확인 및 서명	Y/N □□
6	당사자 확인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	Y/N □□
7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복사, 임대인(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Y/N □□
8	대금 지급 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 - 계약서에 적힌 계좌번호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통장으로 입금	Y/N □□
9	채권확보	전세권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 동의 여부	Y/N □□
10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여부	Y/N □□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방침으로 확대해 온 심사대상을 운영규정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타 부서 중복 업무(계약 심의위원회 심의대상)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사 대상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의 변경(제2조)

- 일반계약 용어 정의 삭제
- 공유재산 및 임대차 용어 정의 신설

나. 계약심사 대상 및 기능(제4조, 제6조)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추가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일반계약) 심사 삭제
- 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 신설
- 임대차 계약 신설

다. 계약심사단 설치 및 구성(제5조)

- 조직개편으로 소속부서 변경 반영 (재무과 ⇒ 법률지원담당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42호****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2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전화 2133-8186, 팩스 2133-0765, 이메일 bjg121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56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3조의2)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를 삭제(안 제3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대외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전화 2133-6655, 팩스 2133-0820, 이메일 nicehoon7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57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감채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조항 개정

2. 주요내용

○ 감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담당관(전화 : 2133-6864, FAX : 2133-0825, E-mail : stevei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6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조항 개정
2.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2133-7325, FAX: 2133-0718, E-mail: kwang9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72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17.12.31)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 '17.4.1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과 [전화: 02)2133-5550, FAX: 02)2133-0714, E-mail :jslee77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73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정투융자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2133-6809, 팩스 2133-0823, 이메일 leejaenam@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6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50호(1979.05.08.)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1995.11.24)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일대 올림픽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운동장	송파구 방이동 88 일대	1,962,867.8	-	1,962,867.8	1979.5.8 (건고 150)	-

2)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계		방이동 88일대	1,976,370.0	감)13,502.2	1,962,867.8	
변경	운동시설	방이동 88-2, 89-27 일대	580,852.8	－	580,852.8	'95.11.24 (서고 326)
	관리, 업무, 관광사업, 유스호스텔시설	방이동 88,88-1,7,8 일대	123,492.3	－	123,492.3	
	전시,관람,집회시설	방이동 88-2 일대	75,326.0	－	75,326.0	
	사적지 등	송파구 방이동 88-3,4,5,6,9, 10,11,12,13 일대	732,459.2	감)13,533.3	718,925.9	
	유보지	잔여지	464,239.7	증)31.1	464,270.8	

(2) 건축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존건축물	비고
20% 이하	50% 이하	4층 이하	- 올림픽파크텔 18층 - 올림픽화관 1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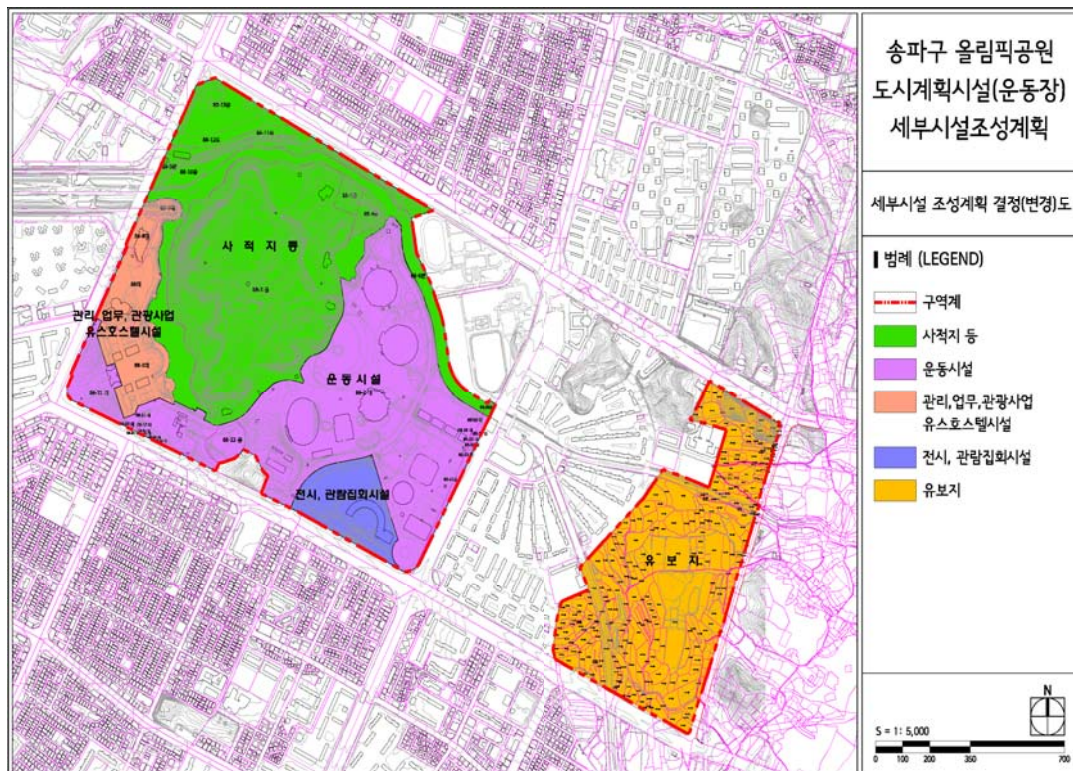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1) 및 송파구 도시전략과(☎ 2147-2169)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8호

금천구 독산동 금하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금천구 독산동 110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금천구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금천구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금천구 독산동 1100번지 일원	-	증) 56,611	56,611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수정가결

- 공동이용시설은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확보검토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6,611	-	56,61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6,611	감) 56,611	-	감)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증) 56,611	56,611	증) 100.0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6,611.00	56,611.00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25,114.50	25,114.50	44.4	
	도로	20,575.20	20,659.20	36.5	증 : 84㎡
	공원	1,501.60	1,501.60	2.7	
	완충녹지시설	3,037.70	2,953.70	5.2	감 : 84㎡
	주민공동이용시설	-	-		향후 부지확보 시 설치 예정
택지	소계	31,496.50	31,496.50	55.6	
	택지	31,496.50	31,496.50	55.6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6	8	국지 도로	105	소3-251 (소하동55-121)	대2-1 (소하동45)	일반 도로		경고 제87-157호 (87.6.8)	광명하안 택지개발 사업
기정	소로	2	70	8	국지 도로	107	대2-7	소3-252	일반 도로		경고 제87-157호 (87.6.8)	
기정	소로	2	86	8	국지 도로	182	소-251 (독산동779-19)	소3-279 (독산동700-6)	일반 도로		경고 제87-157호 (87.6.8)	
변경	소로	2	86	8	국지 도로	192	독산동 1094번지	독산동 1126번지	일반 도로		경고 제87-157호 (87.6.8)	증 (84㎡)
기정	소로	2	87	8	국지 도로	133	소2-86 (독산동757)	소2-66 (독산동756)	일반 도로		경고 제87-157호 (87.6.8)	광명하안 택지개발 사업
기정	소로	3	251	6	국지 도로	251	대2-7	소2-66 (독산동756-29)	일반 도로		경고 제87-157호 (87.6.8)	
기정	소로	3	277	6	국지 도로	133	소2-86 (독산동757-3)	소2-66 (독산동756-29)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78	6	국지 도로	133	소2-86 (독산동759-4)	소2-66 (독산동756-4)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79	6	국지 도로	327	중1-12 (소하동33-61)	소2-86 (독산동206-6)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80	6	국지 도로	28	소2-66	소3-289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81	6	국지 도로	47	소2-66	소3-292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82	6	국지 도로	40	소2-66	소3-292 (독산동779-22)	일반 도로		경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83	6	국지 도로	98	소2-66	소3-292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84	6	국지 도로	109	소-66	소3-292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85	6	국지 도로	111	소2-66	소3-292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86	6	국지 도로	41	소3-251	소3-277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87	6	국지 도로	35	소3-278	소3-279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88	6	국지 도로	159	소3-251	소3-279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89	6	국지 도로	65	소3-251	소3-277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90	6	국지 도로	48	소3-278	소3-279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91	6	국지 도로	130	소2-70	소3-279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92	6	국지 도로	258	소3-251	소3-279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소로	3	293	6	국지 도로	23	소3-279 (독산동756-70)	독산동 779-10	일반 도로		건고 제87-711호 (87.12.24)	
기정	대로	2	4	30~8 1	주간선 도로	719	대2-1 (독산동764)	대1-3 (소하동33-50)	자동차 전용	안양천변 독산한신아 파트	경고 제351호 (87.10.5)	

나) 완충녹지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완충녹지	금천구 독산동 1094	12,137.8	감) 84	12,053.8	-	

다) 공원(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어린이 공원	금천구 독산동 1112	1,501.6	-	1,501.6		

5)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 기존의 기존형태를 가급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대개발 규모

- 대상지 내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개발규모를 설정
- 필지 간 합필 또는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예외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최대개발규모	정비계획구역 전체	2필지 이하, 500㎡ 이하 (단, 2필지 초과 4필지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시 금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위치 미 확정(추후 부지매입 예정)
- 설치계획은 부지확보 이후 설계 및 시공에서 결정 예정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

- 대상지 내 건축물의 주용도는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로 함
- 저층주거지의 계획적인 환경관리를 하기 위하여 불허용도를 설정

적용지역	불 허 용 도	비 고
대상지 전체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30% 초과))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다중주택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계획(ex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 건폐율 및 용적률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 60%이하(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 200%이하(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 건축물 높이계획[의무사항]

- 관련법령에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 밀도기준(건폐율, 용적률)을 준용
- 높이는 대상지 일대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최고층수 6층(필로티 포함)

구 분		적용지역	층수(안)	비 고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상지전체	4층이하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대상지전체	6층이하(필로티 포함)	

8)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기존 법령에 따름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기존 법령에 따름

10)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설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기반 시설 등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금천구청장	해당없음	
		주택개량	기한없음	토지등소유자 (주민 스스로)	해당없음	

11)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 정비계획결정 이후 주민 10%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예정(금천구청장) - 독산동 금하마을 주민공동체운영규약, 주민협정서에 의거 운영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계획 수립 -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권장사항은 주민협정서에 포함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준수 및 공동체활성화 유도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보안등 개선(보안등 개선 및 CCTV 설치)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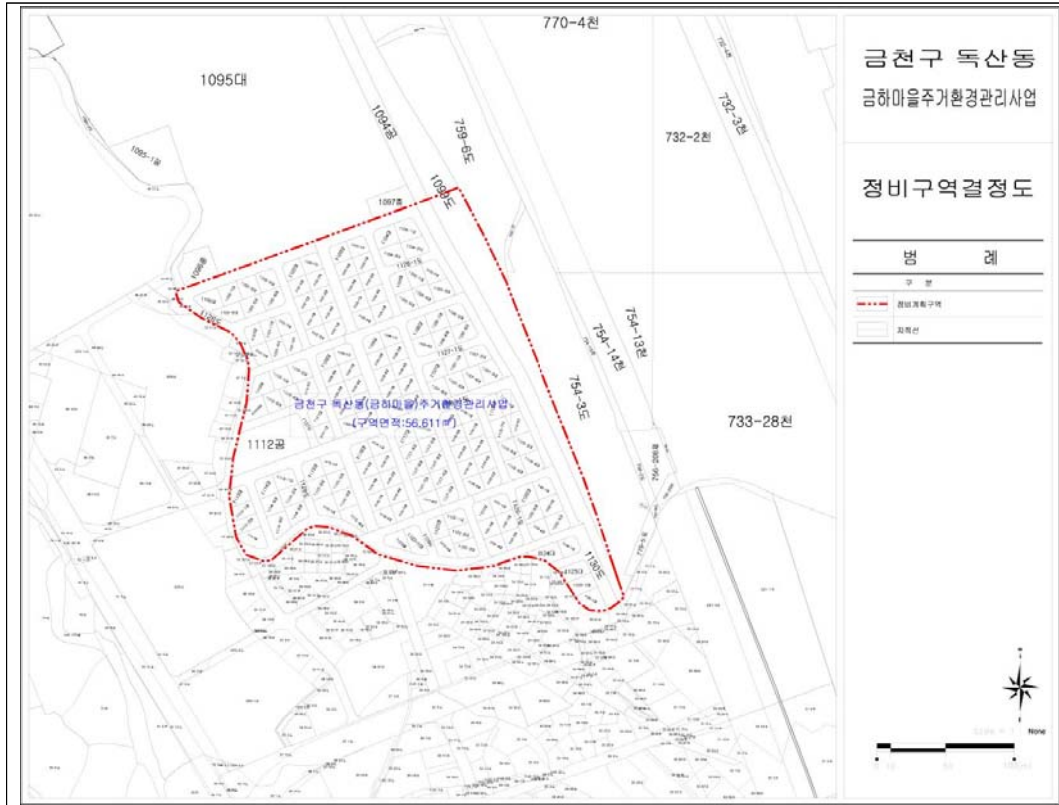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금천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오정민 ☎02-2133-7258)
2) 금천구청 건축과(담당자 박재춘 ☎02-2627-2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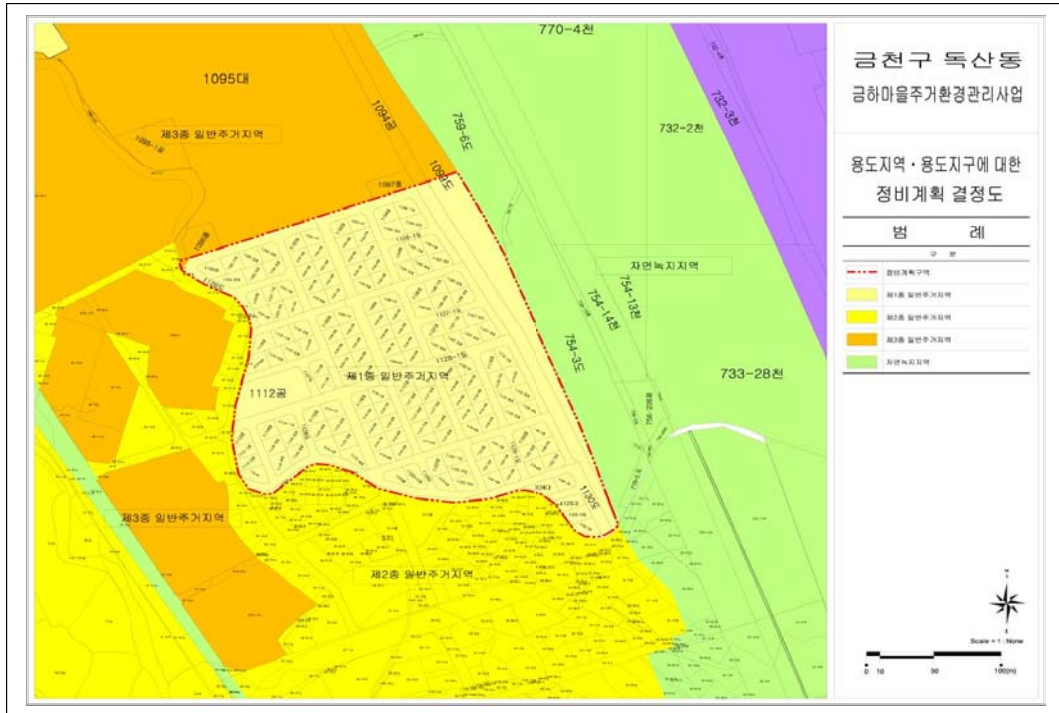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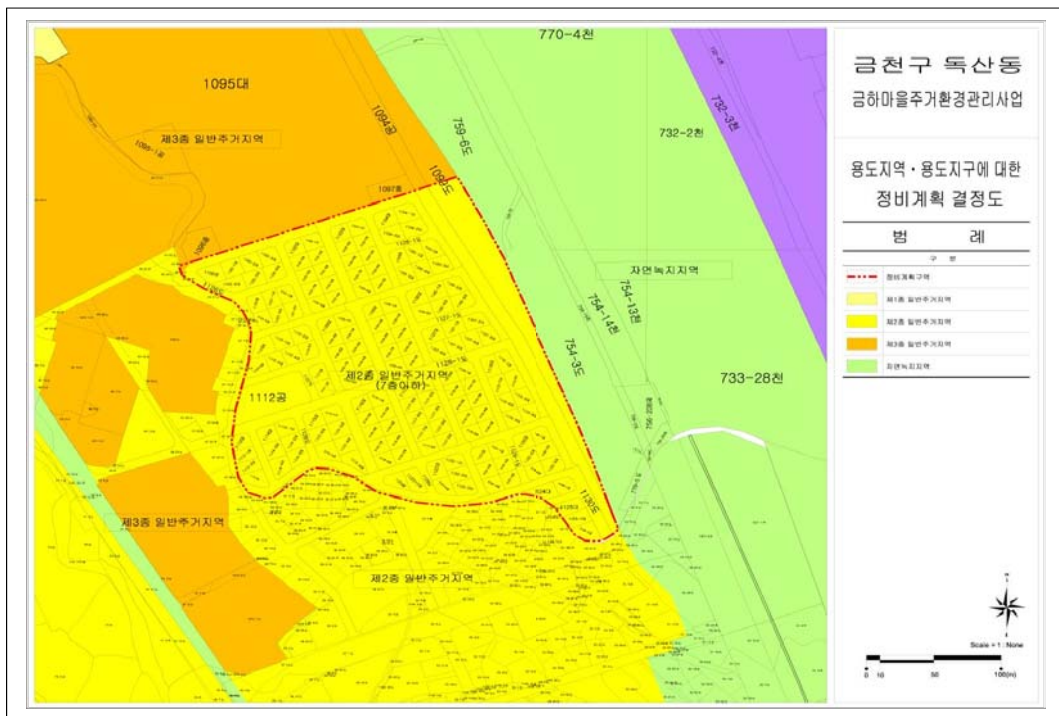
□ 정비구역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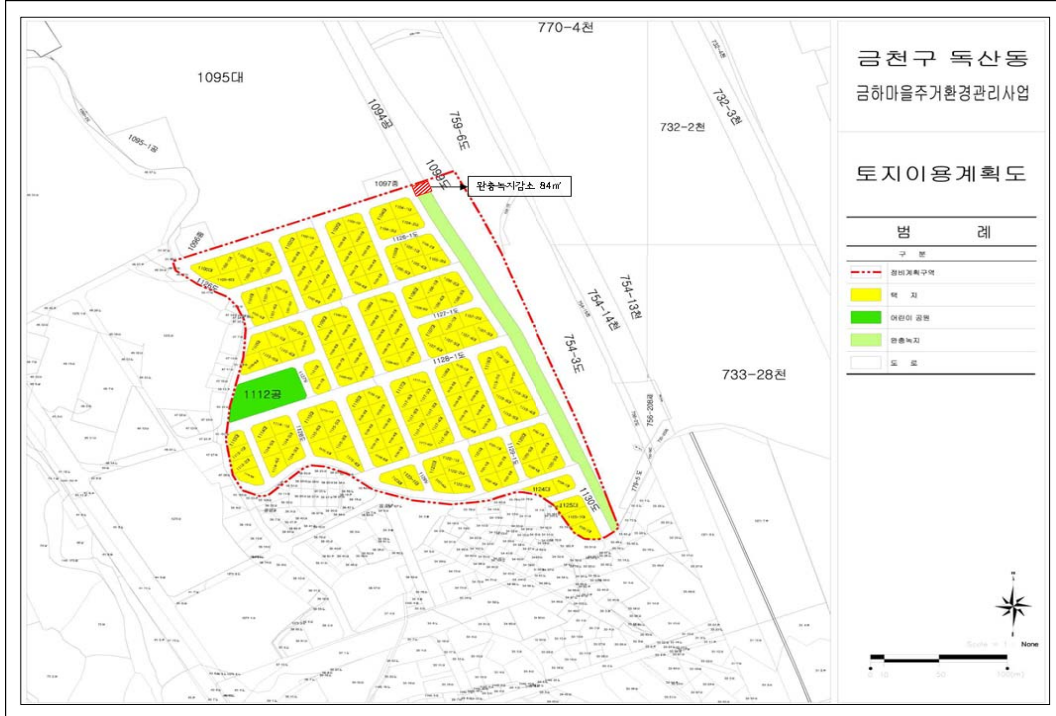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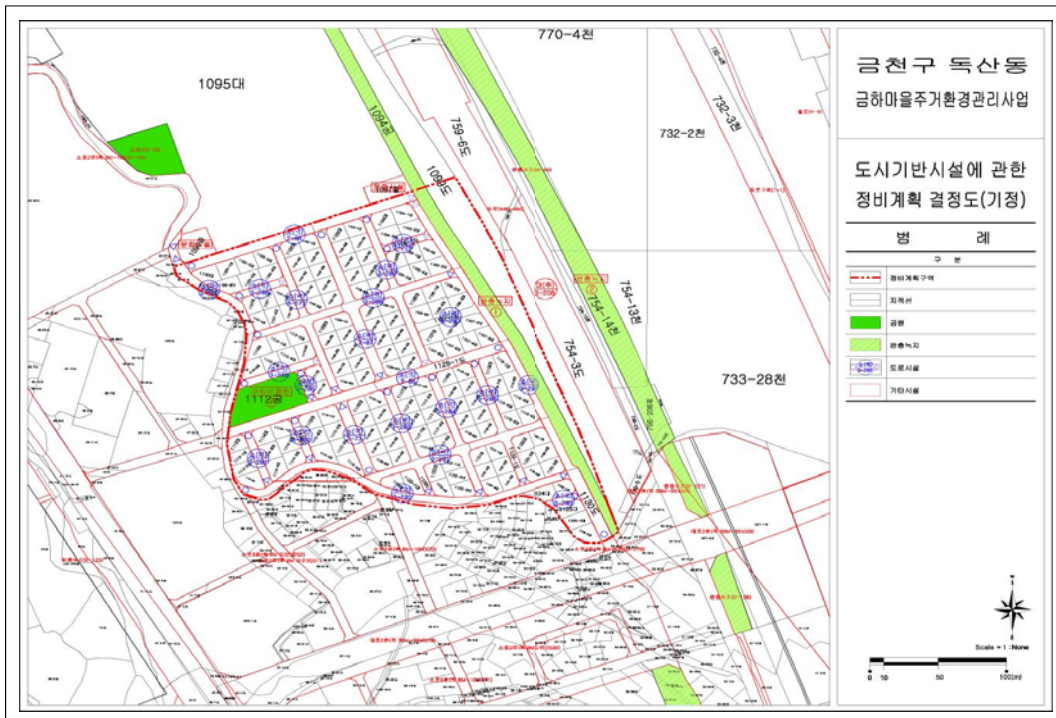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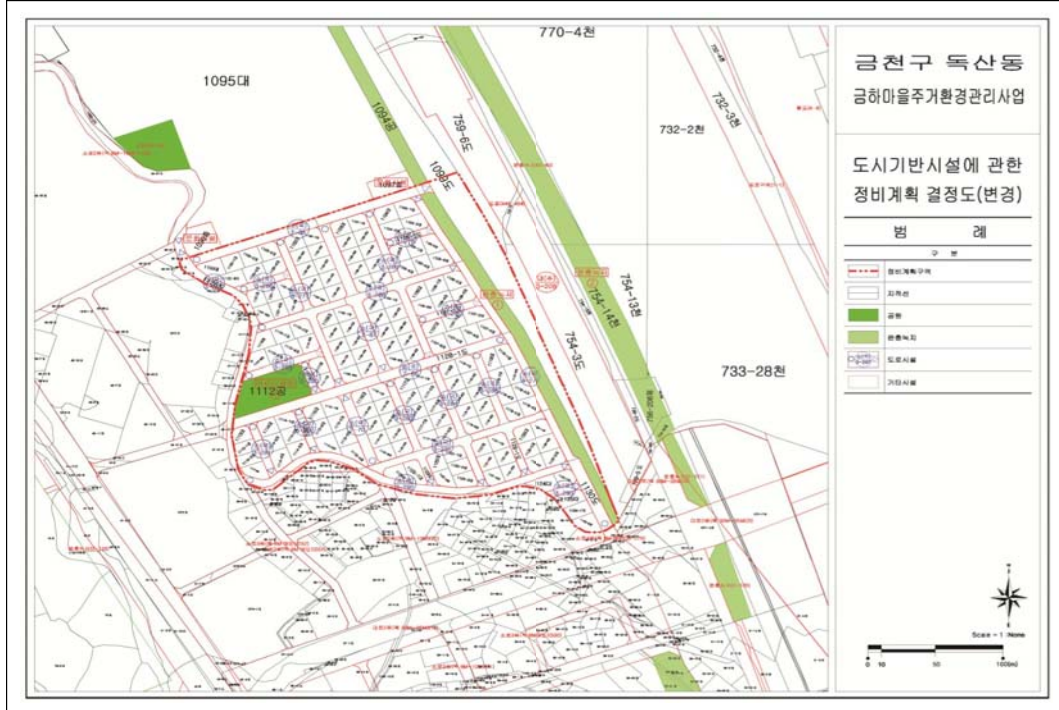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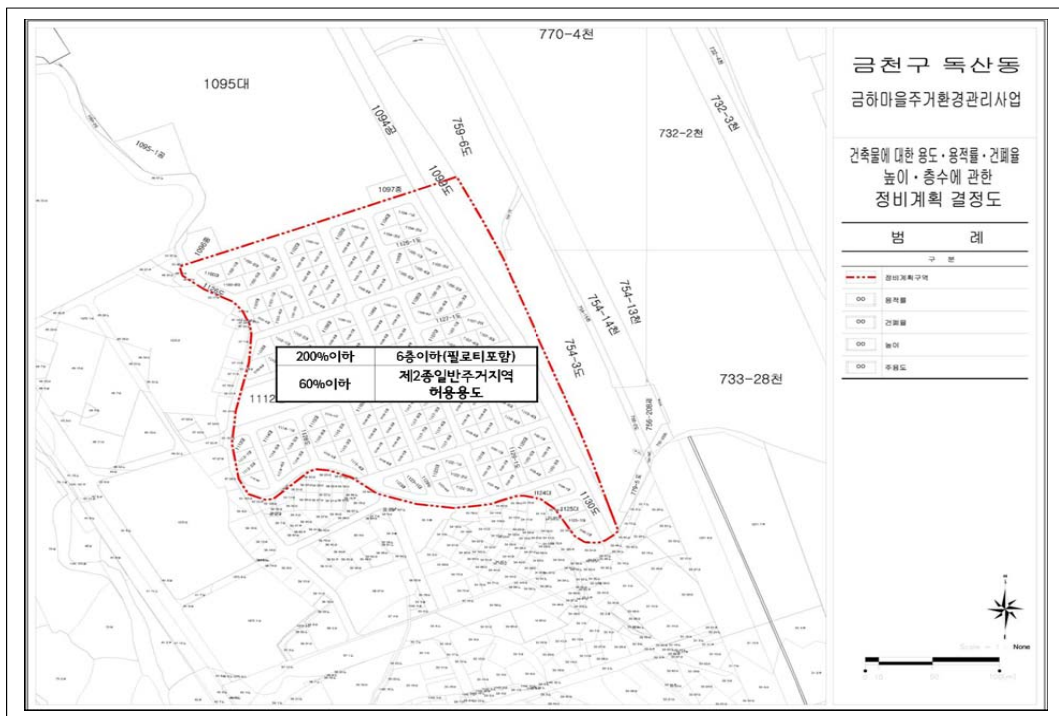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기정)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층수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 주거환경관리사업 종합계획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05호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공고

지하수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I. 계획의 개요

☐ 관리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지하수법 제6조 2항』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기 수립된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2006)’을 최근 수립된 ‘지하수 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12)’과 연계하고 그간의 제도와 수자원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현 시점에 맞게 재수립
- 서울시 지하수 환경여건 및 제도변화에 따라 지하수 분야의 광범위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보전관리와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통해 후대에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

☐ 관리계획의 기간 : 2015년 ~ 2024년(10년)

II. 계획의 주요내용

☐ 지하수 관리비전 및 목표

- 관리비전 :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건전한 도시 물환경
- 관리목표 : 건전한 서울시 지하수 활용을 위한 환경조성 및 관리기반 마련

☐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 서울시 지역은 선캄브리아기 편마암류와 편암류, 시대미상 화강암, 중생대 화강암 및 암맥류, 제4기 충적층 등으로 구성
- 서울시 지하수 함양량 산정기법은 h-WTF(혼합지하수 변동법)과 개발가능량 산정은 지하수위강하곡선 분석법에서 함양률에 10년빈도 가뭄 시 강수량을 적용하고, h-WTF법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함양량을 개발가능량으로 산정하거나, 평균 함양율을 구해서 10년 빈도 가뭄 시 강수량을 적용하여 산정
- 서울시 전체 지하수 함양량은 82,347천m³/년, 개발가능량은 59,692천m³/년으로 나타남(지하수위강하곡선해석법)

☐ 지하수 수량관리 및 이용량

- 개발가능량은 59,692천 m^3 /년이며, 이용량은 21,702천 m^3 /년을 보여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평균 36.4%임

구 분	개발가능량 (천 m^3 /년)	이용량 (천 m^3 /년)	이용량/개발가능량(%)
계	59,692	21,702	36.4%
강남구	3,814	1,451	38.0%
강동구	2,412	1,706	70.7%
강북구	2,304	495	21.5%
강서구	4,561	1,966	43.1%
관악구	2,916	518	17.8%
광진구	1,764	973	55.2%
구로구	1,968	591	30.0%
금천구	1,248	337	27.0%
노원구	3,464	1,362	39.3%
도봉구	2,025	506	25.0%
동대문구	1,419	497	35.0%
동작구	1,652	864	52.3%
마포구	2,307	336	14.6%
서대문구	1,771	460	26.0%
서초구	4,598	1,797	39.1%
성동구	1,585	491	31.0%
성북구	2,415	258	10.7%
송파구	3,183	1,549	48.7%
양천구	1,693	629	37.2%
영등포구	2,397	1,655	69.0%
용산구	2,039	283	13.9%
은평구	3,196	664	20.8%
종로구	2,193	935	42.6%
중구	968	851	87.9%
중랑구	1,787	529	29.6%

- 지하수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중구(87.9%), 강동구(70.7%), 영등포구(69%) 순임

☐ 지하수 보전·관리 계획

-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강화
 - 전수 실태 조사 후 시설물 상태 파악, 등급 분류, 연차별 개선계획 마련
 - 주기적 정기점검(3년 주기), 시설 등급 수정 등 연차별 개선 반영
-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지하수 수질관리체계 구축
 - 도시특성 및 기반암 특성에 적합한 지하수 수질특성 및 관리방안 마련
 - 수질오염 발생 예상지점에 대한 정밀조사 및 원인규명 방안 수립
- 방치공 및 불법지하수 시설 정비 지원
 - 방치공 원상복구
 - 자치구별 적극적인 불법 지하수 양정화 기간 운영 및 시 차원의 행정지원
- 서울시 관리수위 설정 운영 및 지점별 수위관리 프로세스 적용
 - 지속 축적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 지하수위 관리정책을 매년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하수관리에 반영
 - 자치구별 토지이용형태별, 공사영향권별, 하천인접지역별, 지점별 등 다양한 카테고리 에 대한 지하수관리정책에 적용
 - 지하수위 이상변화 지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지하수장 애해소, 지하수자원 보호 등 적극적인 지하수관리정책 시행

☐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

- 유출지하수 활용증대를 위한 시범사업
 - 유출지하수 활용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 유출지하수 활용 증진을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검토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강화 및 비상가동체계 마련
 - 민방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후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자가발전기 등 필수구비항목, 정수처리기 등 지점별 특성에 맞는 구비물품 목록화
-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비상급수 필요수량 확보
 - 신규 비상급수 전용시설 추가 개발
 - 유출지하수, 빗물, 하수재처리수 등 대체수자원 개발을 통한 비상급수량 확보

III.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7. 6. 22. ~ 2017. 7. 14.(22일간)

☐ 열람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물순환정책과

☐ 열람서류

-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요약집(33쪽)
-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본보고서(215쪽)
-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60쪽)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1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공표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제1항제1호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1. 공표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공표

2. 공표기간 : 2017.06.22. ~ 2017.12.21. (6개월)

3. 공표대상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위반내용		행정처분사항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행위	행정처분일	행정처분내용
대경페트로㈜	강정옥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18(성수동2가)	2017.03.06.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2017.06.12.	사업정지3개월 (2017.06.15.~2017 .09.14.)

4. 법적근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나.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

다. 같은 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5. 유의사항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위반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같은 법 제13조(등록의 취소)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사항

위 공표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오픈넷 홈페이지(www.opinet.co.kr)에 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19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교통안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공 고 명 : 2017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2.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3. 공고내용 : 2017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내용
 - 계획기간 : 2017년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체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목표 및 방향
 - 2017년 교통안전 추진과제 및 부문별 추진계획
 - 사업별 투자계획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02-2133-247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호(1982.1. 19.)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고시된 서초구 서초동 269-4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3146-1414),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2155-6782)에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할 수 있고,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중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참조 : 급수부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4층, 전화 : 3146-1414, FAX : 3146-1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위치 : 서초구 서초동 269-4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 다. 사업의 명칭 : 양재가압장 설치(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사업에 포함)

- 라. 사업 규모 : 양재가압장 설치 $Q=209\text{천m}^3/\text{일}$ ($H=29\text{m}$),
 송배수관 부설 $D=1,200\sim 1,500\text{mm}$, $L=531\text{m}$
- 마. 면 적 : $1,499\text{m}^2$ (도시계획시설 면적 $14,600\text{m}^2$ 중 10.3%)
- 바.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 7. ~ 2020. 6.
-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따로붙임
-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따로붙임
-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3146-1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용지 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사용 또는 수용 면적(m^2)	소유자		비고
	구·동	지번			주 소	성 명	
1	서초구 서초동	269-4	수	1,309	-	서울시	
2	서초구 서초동	269-5	임	190	-	서울시	
합계		2필지		1,49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28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설계업전문1종 (E-2-517)	(주)한빛안전기술단 (110111-5382421)	조용선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5, 807호(구로동, 에이스트원타워1차)	2017.06.0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45호

『2017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의 집수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17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1. 사업개요

- ☐ 사업명 : 서울가꿈주택 사업
-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 ☐ 대상주택 : 단독 및 다가구주택 10호(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타용도 복합 건축물 제외)
- ☐ 사업내용 : 지역 내 서울가꿈주택단지 조성
 - 개별주택 : 대수선, 수선, 건축물 성능개선공사 등
 - 기반시설 :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단체 신청시 우선 정비)

2. 모집개요

- ☐ 신청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창신송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 장위, 신촌, 상도4, 암사) 내 소재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소유주
- ☐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인 신청
 - (단체) 근접한 대지의 주택 소유주 3인 이상이 집수리를 희망할 경우 신청
 - * 사업 대상자 선정시 단체를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
- ☐ 신청 접수기간
 - 2017.06.22.(목) 09:00 ~ 2017.06.28.(수) 18:00
- ☐ 신청접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자치구 담당부서(우편 또는 방문 접수)

도시재생지원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종로구 지봉로 5길 5(창신동 237) 3층	02-2133-8465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산구 신흥로 95-17(용산2가동 1-485)	02-2199-7397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구로구 가리봉동 111-5(가리봉동 현장소통마당)	02- 830-7855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	성동구 상원6나길 22-11(성수동1가 13-445) 2층	02-2286-7790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성북구 장위로15길 74-10	02-2241-2812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서대문구 연세로5길 26-9, 2층	02-3140-8343
상도4 도시재생지원센터	동작구 성대로29길 53(상도4동 주민센터 3층)	02- 820-2885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	강동구 올림픽로97가길 57(암사1동 주민센터 2층)	02-3425-6042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 단체 신청

- ① 사업 참여 신청서(단체) : 참여자 서명부, 구역현황 사진 포함
- ② 개인 참여 신청서(개인) : 건물현황 사진, 집수리 예정 현황 사진 포함
※ 단체로 참여 주민 중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는 주민에 한함
-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④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 개인 신청

- ① 개인 참여 신청서(개인) : 건물현황 사진, 집수리 예정 현황 사진 포함
-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④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 신청서 작성방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안내

공모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5 담당 김철기)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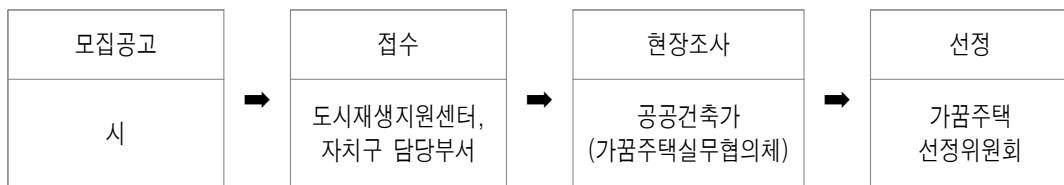
○ 상담기간 : 공고기간 내

○ 찾아가는 주택 진단 상담서비스 : 집수리 닥터단 방문상담

- 신청 : <https://jibsuri.seoul.go.kr> (집수리닷컴)

* 집수리 닥터단 : 저층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개략적으로 점검
하고 안내해드리는 전문가 집단

□ 선정절차



□ 선정기준 : 사업 효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1순위 : 단체(단체 사업 참여 및 기반시설 정비 연계 사업 효과 큰 곳)
- 2순위 : 외부(외부 개선 사업 효과 큰 곳)
- 3순위 : 공사범위가 넓고, 집수리 타당성, 실현 가능성, 관계법령 적합 여부 등 고려

3. 주요 지원내용

□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 까지, 최대 1천만원 이내
(단, 내부공사비에 대한 지원은 최대 300만원 이내)

<보조금 지원 기준>

- ✓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 ✓ 지원범위 :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 공사(신축 및 증축(층수 증가)하는 제외)
 - ① 외부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담장, 외단열, 방수, 외부 창호공사 등
 - ② 내부공사 : 도배, 장판, 실내창호(문), 내단열 등 내부 공사
- ✓ 지원조건 : 준공 후 **4년간 임대료** 동결, 건축가이드라인 준수
- ✓ 지원결정 : 전문가 현장점검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 시공업체 : 2개 이상 시공업체 견적 받은 후 개별 선정

☐ 집수리 관련 전문가 운영(서울시 공공건축가 등) : 집수리 상담 실시

4. 선정결과 최종 발표

- ☐ 발표일시 : 2017. 7. 4(화) 예정
- ☐ 방 법 : 개별통보

5. 유의사항

- ☐ 신청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아래의 경우 사업비를 회수함>

-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할 경우
- ✓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할 경우
-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6. 문의처

-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 ①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02-2133-8465)
 - ②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02-2199-7397)
 - ③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02-830-7855)
 - ④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02-2286-7790)
 - ⑤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02-2241-2812)
 - ⑥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02-3140-8343)
 - ⑦ 상도4 도시재생지원센터(☎02-820-2885)
 - ⑧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02-3425-6042)
-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5)

※ 신청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17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참여 신청서(단체)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평가순위
신 청 인 (대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연락처	
사업내용	① 사업위치(도로명):	② 참여주택 수:
	③ 주요 집수리 내용 (간략히 작성)	
	④ 기반시설 정비 내용 (간략히 작성)	

상기 본인 외 주민 00명은 `17년 서울가꿈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참여주민

서명부 제출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참여신청서(개인) 및 관련서류 각 1부 ※ 단체로 참여한 주민 중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는 주민에 한해 제출
------	---

[별지 제1-1호 서식]

서울가꿈주택 참여자 서명부

연번	성명	주소	공사내용 (복수선택 가능)		서명
			집수리	골목길 정비	
1			0	0	
2					
3					
4					
5					
6					
7					
8					
9					
10					
11					
12					

※ 골목길 환경개선 : 외부 담장 개선 또는 도로 포장 등 골목길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
(공사예시 : 외부 담장 벽화, 도로 포장 등)

[별지 제1-2호 서식]

☐ 구역 현황 사진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2-1호 서식]

☐ 건물 현황 사진

주택전면사진	주택측면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 집수리 예정 현황사진

<위치설명> 사진첨부	<위치설명> 사진첨부
<위치설명> 사진첨부	<위치설명> 사진첨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17년 서울가꿈주택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국민기초수급대상,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격조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주택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약 서

■ 본인은 서울가꿈주택 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가꿈주택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함에 동의함

2017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가꿈주택 집수리지원조건 동의서

주택소재지 :

건물소유주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지원조건

※ 지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지원

- 건축 지침 사항,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주민협정안 결정시 동의
- 전문가 사전승인 (현장조사, 공사과정 및 준공검사)
- 약정기간 4년간 세입자 임대료 인상 제한
 - 계약체결시 장기계약 체결, 기간만료전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금 반환 확약
- 공사업체는 사회적기업(집수리분야), 마을기업(집수리분야) 등 시공업체 2개 이상 비교견적 후 선정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전시홍보물 설치 협조
- 공사완료 후 1개월간 홍보관 활용 제공(해당 주택으로 선정시)

□ 지원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의 경우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시 대상자(건물주)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 가.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상기 본인은 서울가꿈주택 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위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결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았으며, 이를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2017 . . .

위 동의인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50호

2017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추천 공고

서울시는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명예시민 추천대상자 자격

가. 외국인으로서 서울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

(나)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

(다) 서울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

※ 외국인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 등록을 필한 분

(외교관 등 외국인 등록 면제자 포함)

나.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하(총 거주 5년 이하)인 자도 서울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추천 가능

※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평가·결정

2. 추천권자

가.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

나. 사회단체의 장

다. 30인 이상의 시민(연대서명 필요)

3. 제출서류

가. 추천서 1통 : 추천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필요(서식 : 별첨)

- 추천받으시는 분의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사항 등을 한글이나 영어로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진 1매 : 추천 대상자가 최근 6월 이내 찍은 사진(3.5cm×4.5cm)

4. 추천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7. 6. 19(월) ~ 7. 14(금)

나. 접 수 처 :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서울시청 8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국제교류담당관
(우편번호: 100-744)

- 이 메 일 : jrim@seoul.go.kr

- 연 락 처 : 02-2133-5267(팩스 02-2133-0704)

※ 이메일로 접수 문서 송부 시에는 접수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5. 추천대상자 심사 및 선정

가.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 및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을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개최 : 2017. 8월
- 서울시의회 명예시민증수여 의결 : 2017. 9월

※ 필요시 추천해 주신 분에게 추천내용에 대한 자료보완 및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명예시민 혜택

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공원 등 시립시설 무료입장

나.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 부여

7. 기타사항

가. 추천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소식(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

나. 명예시민 선정결과는 서울시의회의 동의(의결) 후 7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다.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오는 10월 말 ‘서울 명예시민의 날 행사’ 중에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담당관(담당 : 김정림, ☎ 2133-526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5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공표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공표
2. 공표기간 : 2017.07.01. ~ 2018.06.30. (12개월)
3. 공표대상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행위	처분일	처분내용
제131호	(주)태영오일 (서동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31 (성수동2가)	2016.10.27.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행위	2017.06.21.	사업정지 6개월 (2017.07.01. ~2017.12.3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행위	처분일	처분내용
제131호	(주)태영오일 (서동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31 (성수동2가)	2017.02.02.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 거부행위	2017.06.21.	사업정지 6개월 (2017.07.01. ~2017.12.31.)
			2017.03.07.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		

4. 법적근거

-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나. 같은 법 제38조제1항
 다.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
 라. 같은 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5. 유의사항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위반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같은 법 제13조(등록의 취소)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사항

위 공표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오픈넷 홈페이지(www.opinet.co.kr)에 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5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국민대학교)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6호(1974.12.28.)로 도시계획시설(학교)이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1호(2014.01.09.)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성북구 정릉동 861-1 일대 국민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구역별 관리계획 : 일반관리, 외부활동, 상징경관, 녹지보존) 변경 결정(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 02-2133-8411, fax : 02-2133-0739)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 (☎ 02-2241-2763, fax : 02-2241-6556)

다.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취지

-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의 역할증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 관리계획(일반관리, 외부활동, 상징경관, 녹지보존)을 수립하여 지역과 연계된 대학의 도시적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현

라.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학 (국민대학교)	합 계		202,127	증) 3,547	205,674	-	-
		제1캠퍼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일대	166,401	증) 1,342	167,743	1974.12.28 (서고 제196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제2캠퍼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55-2일대	5,178	증) 813	5,991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3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47-2일대	30,548	-	30,548	2015.11.19. (서고 제367호)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4캠퍼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11-1일대	-	증) 1,392	1,392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세부시설조성계획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토지이용계획 중심 관리(6개로 결정) (건축, 녹지, 조경, 운동장, 도로, 주차장) · 건축별 높이 결정	· 지역 입지특성을 반영한 구역 결정 (일반관리, 외부활동, 상징경관, 녹지보존) · 구역별 높이·밀도 결정

마. 구역별 관리계획 및 관련도면 : 생략 (열람장소 비치)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17-71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9호(2015.08.06)로 도시계획시설(가로공원) 결정(최초)되고 용산구 고시 제2016-123호(2016.11.03)로 도시계획시설(가로공원) 결정(변경)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325 ‘한강로가로공원(가칭)’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최초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용 산 구 청 장

1. 결정취지 : 용산 리더스빌딩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녹지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휴게 및 모임 공간 제공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325
3. 면 적 : 1,076.3㎡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원녹지과(☎02-2199-7603)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강로가로공원(가칭)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용산구 한강로3가 65-325번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076.30	497.84				28	
기 반 시 설	소 계	391.03					
	광 장	258.05					
	도 로	132.98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조 경 시 설	47.21	47.21				3	
휴 양 시 설	59.6	59.6				7	
관 리 시 설						18	
녹지 및 기타	578.46						
시 설 율 (법정 :제한없음)	$(497.84/1,076.3) \times 100 = 46.25\%$						
건 폐 율 (법정 :20%)	건축물 없음						

2. 시설조서

구 분		최 초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076.30	497.84					28	
기 반 시 설	소 계			391.03	391.03						
	광 장	가	65-325 대	258.05	258.05						
	도로		65-325 대	132.98	132.98						
조 경 시 설	소 계			47.21	47.21					3	
	데크	나	65-325 대	47.21	47.21						
	수목보호덮개	①	65-325 대							3	
휴 양 시 설	소계			59.6	59.6					7	
	연식의자	②	65-325 대	6.4	6.4						
	야외테이블	③	데크 내							2	
	앉음벽	④	65-325 대	53.2	53.2						
	등의자	⑤	65-325 대							5	

구 분		최 초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 시설	소 계									18	
	공원안내판	⑥	65-325 대							2	
	관수용수전	⑦	65-325 대							3	
	CCTV	⑧	65-325 대							3	
	공원등	⑨	65-325 대							8	
녹지 및 기타	소 계			578.46							
	녹지 및 기타			578.46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68.1	132.98				
	소로	소 계			68.1	132.98				
		3	1	1.5	3.6	4.98	소로	광장	공원경계	
		3	2	1.5~3.5	36.5	79.47	소로	광장	소로3-3	
		3	3	1.0~3.0	28.0	48.53	소로	공원경계	소로3-2	



◆ 강북구고시 제2017-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70-40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강 북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6~22	국지도로	520	수유동 576-48	수유동 279-297	일반도로	1969.1.18. 서고시3호	일부구간 선형변경
변경	소로	1	4	6~22	국지도로	520	수유동 576-48	수유동 279-297	일반도로		

2)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1	소로 1-4	일부구간 선형 변경	조성이 완료된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일부 상이한 구간을 일치시키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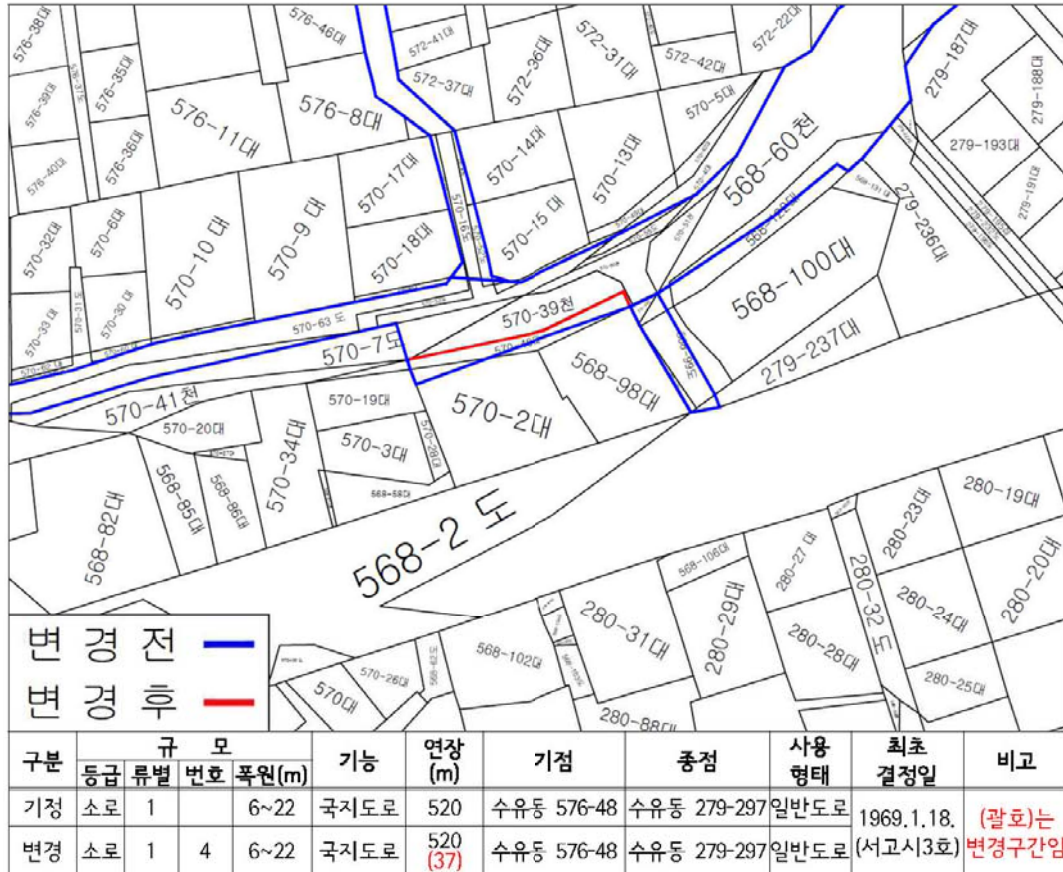
다. 관계도면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46), 도로관리과(☎ 901-5836)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참고용으로 고시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노원구고시 제2017-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지

가. 도 로 : 입안지 북측 개설예정 도로와 남측 수락산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결정하는 사항임.

나. 공공청사 : 노원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지원과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의 업무공간 확충을 위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류	-	10	국지 도로	60	상계동 963-28	상계동 1035-10	이면 도로	제3종일반 주거지역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 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 청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제2관	중계동 27-33	-	증)268	268	-	

○ 건축물의 범위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건축물의 범위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신설	공공 청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제2관	중계동 27-33	60%이하	150%이하	4층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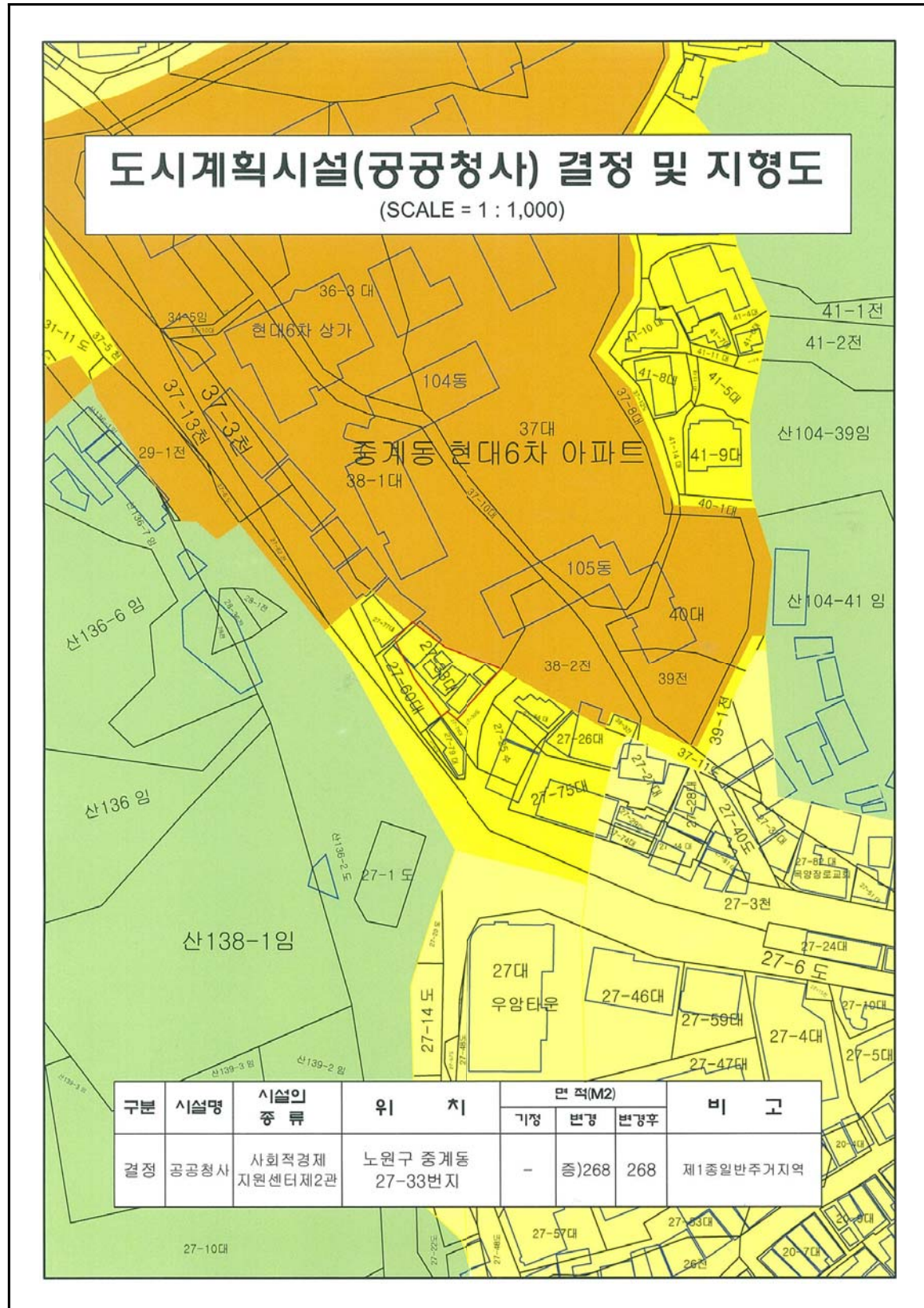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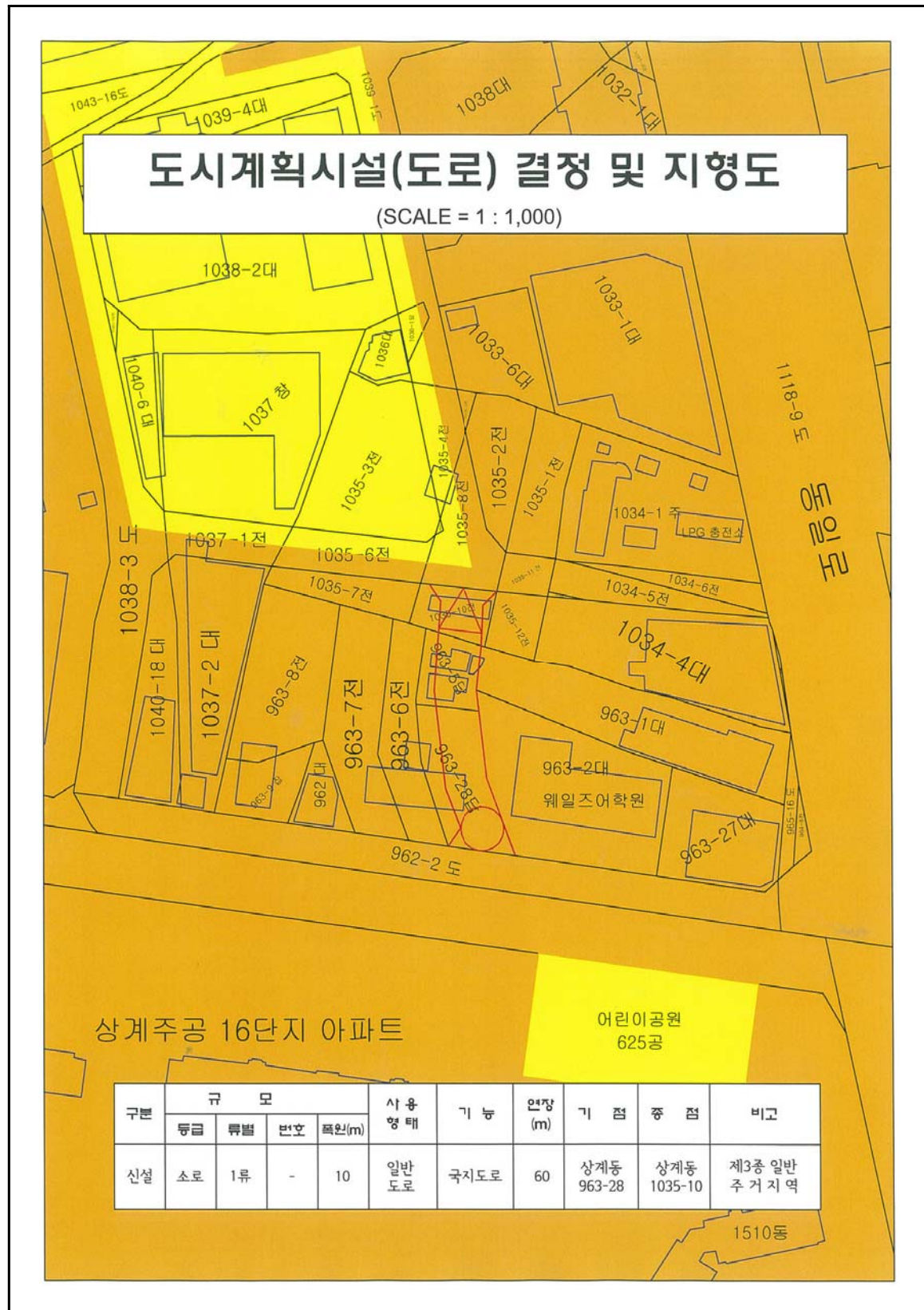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계획과(T.2116-386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고시 제2017-6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공원조성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08.25.)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7-25호(2017.03.16.)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508호(2017.06.01.)로 실시계획(변경)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44-3번지 수락산도시자연공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서류는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44-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 3) 사업내용: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15,820㎡(당초 21,000㎡)

라. 사업시행자: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변경사항: 사업면적 변경

사. 고시방법: 시보게재

아. 열람장소: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66)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 최초사업인가일 : 2017.3.16.

기 정						변 경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권 리의 종류및 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상계동 산44-3	임야	108,897	21,000	이순열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18동 1301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해당 없음					
상계동 산44-113	임야	15,820	15,820	이순열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18동 1301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해당 없음					

◆은평구고시 제2017-61호

도시관리계획(독바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49호(1996.06.10)로 구역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2002-60호(2002.03.0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5호(2011.04.28.)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재정비) 결정된 독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불광동 12-2 외 5필지의 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지정)변경 제안이 있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06.08.)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독바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 공동개발(지정) 토지(3필지)와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토지(3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여 공동개발(신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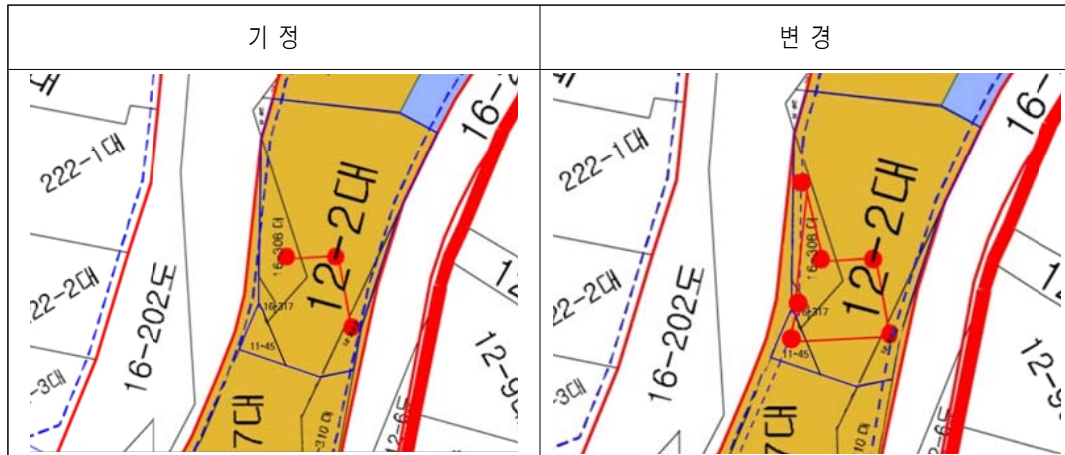
나. 도시관리계획(독바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불광동	11-45	13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12-2	350	공동개발(지정)
		16-308	59	
		16-309	29	
		16-317	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변 경	불광동	11-45	13	공동개발 지정(455㎡)
		12-2	350	
		16-308	14	
		16-309	29	
		16-317	4	
		16-318	45	

※ 불광동 16-308은 16-308, -318 로 분할(2015.10.28)됨

다. 도시관리계획(독바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 불합리하게 표현되어 있는 건축한계선 일부 구간의 선형을 바르게 조정하는 사항이며,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마.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74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7-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440호(1979.10.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17-257호(2017.02.16)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하여 구로구고시 제2017-37호(2017.03.16)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구로구공고 제2017-835호(2017.06. 01)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1-127~551-192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8m, 연장5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동 551-236	대	28	28	신준호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192-1 안서대림이-편한세상201-606				모지번 551-127
2	구로동 571-96	대	32	32	권미자	구로구 새말로 31, 107동 1602호(구로동, 롯데아파트)				
					오세준	구로구 구로동 571-69 401호				
					육재만	구로구 구로동 571-69				
					나복찬	영등포구 구로동 571-69				
3	구로동 551-162	대	25	25	기획재정부					
4	구로동 551-237	대	17	17	기획재정부					무상귀속
5	구로동 551-235	대	226	226	기획재정부					무상귀속
6	구로동 551-238	대	1	1	기획재정부					
7	구로동 551-239	대	1	1	기획재정부					
8	구로동 551-233	대	26	26	이경애	구로구 새말로 31, 101동 702호(구로동, 롯데아파트)				모지번 551-105
9	구로동 551-192	대	15	15	표순기	구로구 구로중앙로32가길 47(구로동)				
10	구로동 551-228	대	29	29	구로구					
11	구로동 551-229	대	8	8	구로구					

물 건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 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동 551-127	화장실	조적조	2	화장실	신준호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192-1 안서대림이-편한세상20 1-606	신은숙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40, 116동 1802호(탄현동, 큰마을현대아파트)	가업류	분할지번 551-236
		담장	조적조	1식	담장						
		쪽문	철재	1식	쪽문						
		가림막	판넬	1식	가림막						
2	구로동 551-103	건물	시멘트블록조	19	주택	문상오	구로동 551-103				분할지번 551-162
3	구로동 551-105	건물	시멘트블록조	23	주택	이경애	구로구 새말로 31, 101동 702호(구로동, 롯데아파트)				분할지번 551-233

◆ 구로구고시 제2017-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4호(1970.10.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17-502호(2017.3.23)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하여 구로구고시 제2017- 61호(2017.4.20)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구로구공고 제2017-837호(2017.06.0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편입토지의 분할측량 성과결과 반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ㄱ 당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84번지 일대

ㄴ 변경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14~6-20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4m, 연장2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1		오류동 6-284	대	23	23	허영준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53	구로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45	압류(징수과)	
2		오류동 6-328	대	22	22	심대식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158	오류1동 새마을금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37-3	지상권	
3		오류동 6-166	대	106	5	심대식	"				
4		오류동 6-320	도	29	29	심대식	"				
5		오류동 6-198	대	169	50	안완수	서울시 영등포구 궁동198				
	변경										
1		오류동 6-284	대	23	23	허영준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53	구로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45	압류(징수과)	
2		오류동 6-328	대	22	22	심대식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158	오류1동 새마을금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37-3	지상권	
3		오류동 6-166	대	101	-	심대식	"				
		오류동 6-359	대	5	5						
4		오류동 6-320	도	29	29	심대식	"				
5		오류동 6-198	대	119	-	안완수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6-63				
		오류동 6-360	대	50	50						

물 건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1		오류동 6-160	건물 보일러실 대문	시멘트블록조 및 패널, 샷시 벽돌조 및 패널 철제 및 대리석	6 1 1식	건물 보일러실 대문	백중환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38 105동204호(목동,목동 롯데캐슬위너 아파트)						
2		오류동 6-73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김한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951-20 은광빌라2-001				
			대문	철제 및 대리석	1식	대문			박은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339 수지1차대진아파트106-805				
							김숙경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9-41						
							차찬모	서울시 도봉구창동814 대우그린아파트101-503						
							이영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88-9삼성빌라401호						
4		오류동 6-220	보일러실 옥상철계단 계단 대문 담장	벽돌조 철제 콘크리트 철제 및 대리석 벽돌조	3 1식 1식 1식 1식	보일러실 계단 대문 담장	조성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6-220						
오류동 6-158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이영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88-9삼성빌라401호								
	오류동 6-73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이영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88-9삼성빌라401호					
		오류동 6-160	건물	시멘트블록조 및 패널, 샷시	6	건물			백중환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38 105동204호(목동,목동 롯데캐슬위너 아파트)				
			보일러실	벽돌조 및 패널	1	보일러실								
대문			철제 및 대리석	1식	대문									
오류동 6-73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이영심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38 105동204호(목동,목동 롯데캐슬위너 아파트)							
2		오류동 6-73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김한섭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5길25, 2동1호(도곡동,은광빌라)				20/96		
			대문	철제 및 대리석	1식	대문	박은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19번길 8, 106동 109호 (석수동,석수경남아너스빌)				12/96		
			화장실	시멘트블록조	1식	화장실	김숙경	서대문구 거북골로19길 7-6 (북가좌동)				32/96		
			수목	감나무 외 1	2주	수목	차찬모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38, 111동 203호 (목동,목동롯데캐슬위너아파트)				32/96		
			3		오류동 6-158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이영심	구로구 고척로1길 14-24(오류동)	강서신용 협동조합	강서구 내발산동719-5 1층 제8호	

◆ 구로구고시 제2017-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시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1-78호(2011.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17-505호(2017.03.23)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하여 구로구고시 제2017-62호(2017.04.2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구로구공고 제2017-836호(2017.06.0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오류동 135-69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편입토지의 분할측량 성과결과 반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당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135-69번지 일대

└ 변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135-13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오류동 135-69호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8m, 연장26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동135-69호주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오류동 135-69	답	344	53	이경훈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27호				
	변경	오류동 135-132	답	53	53	"	"				오류동 135-69

◆ 구로구고시 제2017-9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구로구청장

1. 사업명칭 : 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신축공사 RD1
2. 사업주체
 - 가. 상호 및 성명 : (주)케이지엠씨개발 대표 김영만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3. 사업위치·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대
 - 나. 용 도 : 공동주택(민간임대 아파트 1,0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다. 주택의 규모 : 7개동, 지하2층/지상35층, 연면적 156,976.4437㎡
4. 사업기간 : 2017. 06 ~ 2020. 03.
5.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 사항
6.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주택과(☎:02-860-29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7-9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구로구 개봉동 168-1번지외 1필지상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구로구청장

1. 사업명칭 : 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신축공사 RD2
2. 사업주체
 - 가. 상호 및 성명 : (주)케이지엠씨개발 대표 김영만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3. 사업위치·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168-2번지외 1필지
 - 나. 용 도 : 공동주택(민간임대 아파트 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다. 주택의 규모 : 1개동, 지하2층/지상13층, 연면적 6,794.7882㎡
4. 사업기간 : 2017. 06 ~ 2020. 03.

5.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 사항
6.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주택과(☎:02-860-29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금천구고시 제2017-51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1호(2013.8.22.)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6-775호(2016.8.4.)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된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군부대 부지 특별계획구역내 세부개발계획』 내 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금천구 시흥동 113-14 외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 칭 : (가칭)금천어울림복지센터 신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 :

- 면 적 : 2,420㎡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대표 이선옥)
- 주 소
 - 법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14 새움빌딩
 - 대표자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나산스위트 2302호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7년 9월
- 준공예정일 : 2018년 4월

바.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과(02-2627-1922)

◆ 서초구고시 제2017-66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6.23)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반포동 19-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인가신청의 요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 명칭 : 센트럴시티 대수선 및 용도변경

2) 사업대상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번지

3)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 59,149.40㎡
- 건축연면적 : 286,023.74㎡
- 주요변경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	
건축면적	25,499.28㎡	25,499.28㎡	+ 0.00㎡	
연 면 적	286,023.74㎡	286,023.74㎡	+ 0.00㎡	
용 적 륜 산정연면적	160,765.45㎡	160,558.70㎡	- 206.75㎡	
건 폐 율	43.11%	43.11%	+ 0.00%	
용 적 율	271.80%	271.45%	- 0.3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수선 사항 (전체면적 증감없음)	지상1층	25,485.04 ㎡	25,411.88 ㎡	- 73.16㎡
	지상중1층	7,023.31 ㎡	8,935.17 ㎡	+ 1,911.86㎡
	지상2층	12,166.17 ㎡	12,219.96 ㎡	+ 53.79㎡
	지상3층	11,501.31 ㎡	11,488.59 ㎡	12.72㎡
	지상4층	11,291.37 ㎡	11,278.65 ㎡	12.72㎡
	지상5층	11,927.97 ㎡	11,915.25 ㎡	12.72㎡
	지상6층	10,803.06 ㎡	10,792.34 ㎡	- 10.72㎡
	지상7층	10,267.78 ㎡	10,368.29 ㎡	+100.51㎡
	지상8층	9,784.50 ㎡	9,779.05 ㎡	- 5.45㎡
	지상9층	9,631.80 ㎡	8,489.93 ㎡	- 1,141.87㎡
	지상10층	9,631.80 ㎡	9,626.35 ㎡	- 5.45㎡
	지상11층	5,063.64 ㎡	4,285.30 ㎡	- 778.34㎡
	지상14층	1,190.35 ㎡	1,177.34 ㎡	- 13.0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용도변경 (도시계획 시설)	지하4층	주차장 → 운수시설 (101.1㎡) / 운수시설 → 숙박시설 (101.1㎡)		운수시설(내부복도) 위치이동
	지하2층	창고 → 운수시설 (115.27㎡) / 판매시설 → 운수시설 (56.49㎡) / 운수시설 → 판매시설 (171.76㎡)		운수시설 (쓰레기처리장) 위치이동
	지상1층	운수시설 → 판매시설 (729.32㎡) □ / □ 운수시설 → 숙박시설 (7.56㎡)		운수시설 □ -736.88㎡ (감소)
	지상중1층	운수시설 → 판매시설 (459.78㎡) □ / 판매시설 → 운수시설 (1,216.82㎡)		운수시설 □ +757.04㎡ (증가)
비 고		• 대수선에 따른 시설면적 증감 없음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25,067㎡ 이상 확보(서고2016-91호, '16.4.7) 기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센트럴시티 대표 박주형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

5) 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동사항 없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고시 제2017-8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잠실동 209-9외 2필지' 공동개발 및 보차혼용도로 해제를 위한 주민제안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송 파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 보차혼용통로 등) 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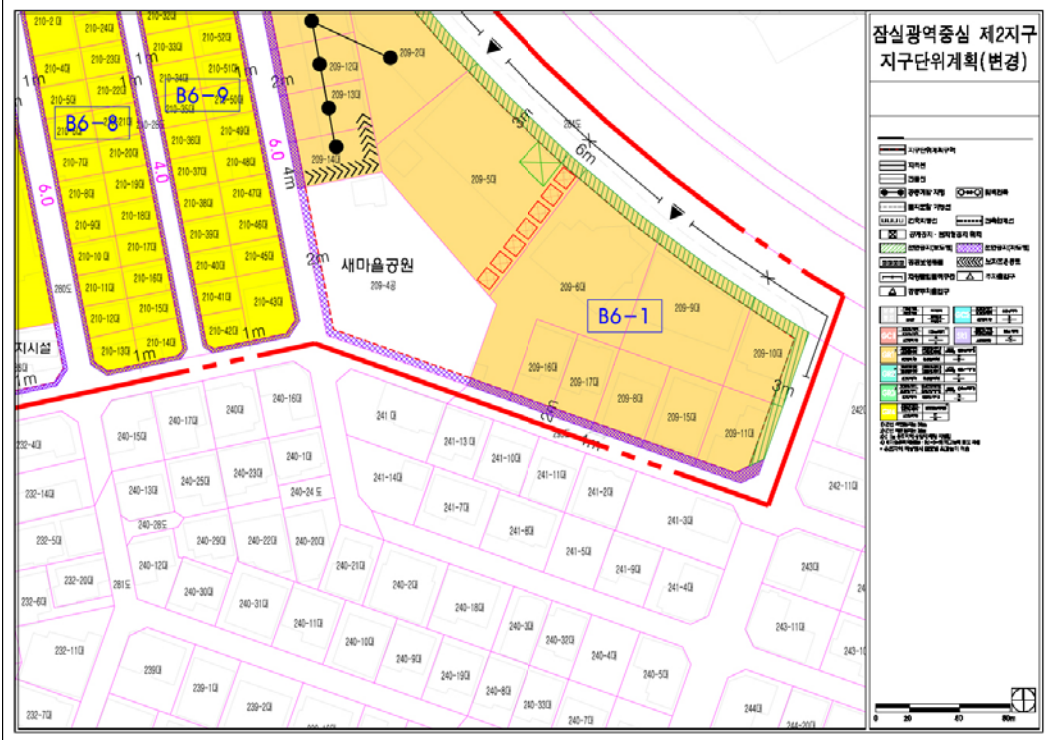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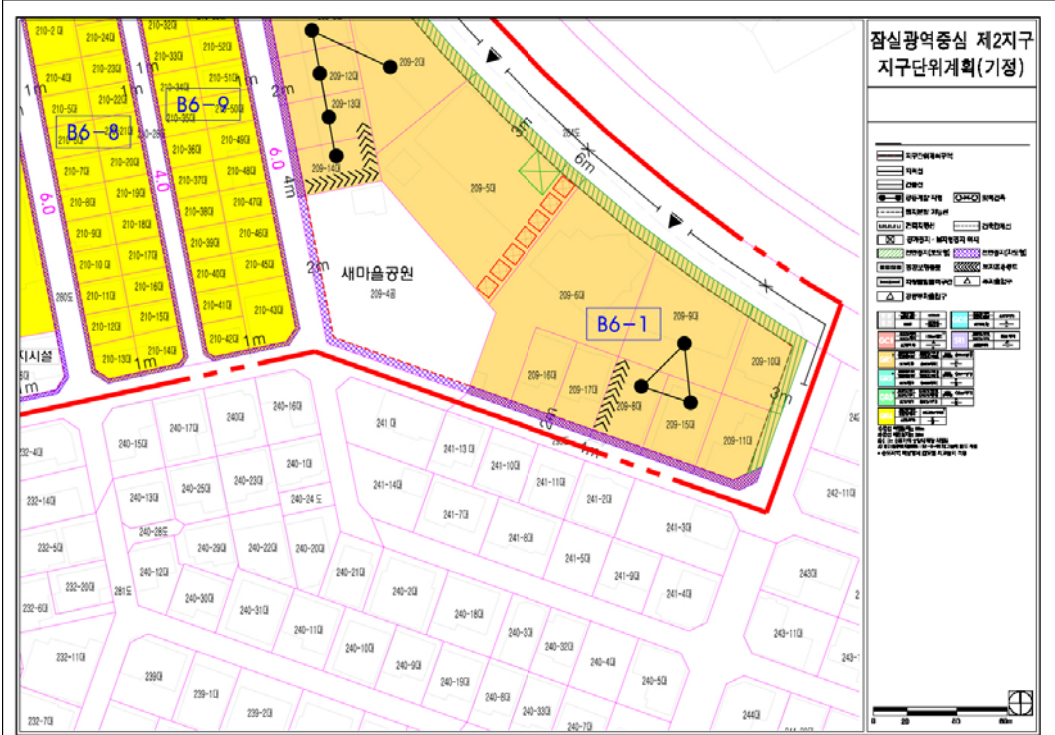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B6-1	잠실동 209-8, 9, 15	1,380.7	공동개발 지정	-	

- 대지내공지 및 보차혼용통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통로(보차혼용통로)	잠실동 209-8번지 보차혼용통로 지정	잠실동 209-8번지 보차혼용통로 폐지	결정도 참조

3. 관계도면 : 별첨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송과구청 도시계획과(☎2147-300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



◆ 송파구고시 제2017-85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3차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06.1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I.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방이동 41-8번지 외 5필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해 공동개발, 도로확폭, 공공청사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	858,791	서공 제397호 ('84.7.4)	-

I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 변경

■ 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7	6	국지 도로	196	방이동 41	방이동 41-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변경	소로	3	67	6~7 (7)	국지 도로	196 (54.64)	방이동 41	방이동 41-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68	6	국지 도로	162	방이동 42-6	방이동 41-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변경	소로	3	68	6~7 (7)	국지 도로	162 (54.83)	방이동 42-6	방이동 41-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주 1) 폭원, 연장의 ()는 금회 확폭되는 구간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본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67	소로 3-67	폭원 : 6m ⇒ 6~7m	◦ 방이동 41-8번지 외 5필지 신축(공동개발)을 위해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개발기준에 따라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연결도로 일부구간 1m 폭원 확폭
소로 3-68	소로 3-68	폭원 : 6m ⇒ 6~7m	

- 2) 지하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철도 : 변경없음
 4)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 1) 광장 : 변경없음
 2) 공원 : 변경없음
 3) 공공공지 : 변경없음
 4) 시장 : 변경없음
 5)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 청사	송파구 방이동 41-8번지 외 5필지	면적	-	176.00	176.00	-	공공업무 사무실
				총	-	지상2층	지상2층		

- 주 1) 입체적 결정범위는 공공청사 연면적 중 전용면적(176㎡)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공공청사 연면적 321.99㎡(전용 176.00㎡ + 공용145.99㎡)
 2) 조성계획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공공청사(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176.0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반 운영 필요에 따른 사회복지과 사무공간 추가 확보.

■ 공공시설 등 제공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공청사 연면적	지상2층	222.91㎡	◦ 계획연면적 ◦ 지하1층/지상2층 ◦ 지하층은 주차장 연결을 위한 공용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및 자하주차장, 기계실 및 전기실 등 면적 ◦ 전용: 176.00㎡
	지하1층	99.08㎡	
	소계	321.99㎡	
건축비		2,407,000원/㎡	◦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2015) - 공공업무사무소 500㎡미만 적용
설치비용		775,029,930원	◦ 설치비용 : 표준 건축비 × 건축연면적 ⇒ 2,407,000원/㎡ × 321.99㎡ = 778,110,890원
부지가액		15,640,000원/㎡	◦ 개별공시지가 : 7,820,000원/㎡ - 인근 토지 실거래 사례 없음 : 개별공시지가 2배
환산부지면적		49.55㎡	◦ 환산부지면적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775,029,930원 ÷ 15,640,000원/㎡ = 49.55㎡
공공청사 지면면적		26.73㎡	◦ (공공시설 전용면적/전체 전용면적) × 도로 기부채납후 대지면적 ⇒ (176.00㎡/10,013.88㎡) × 1,520.60㎡ = 26.73㎡
총 제공면적		76.28㎡	◦ 4.68%

주 1) 상기내역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2014, 서울시)에 의거 산정되었으며, 조성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건축허가시 재산정하여 반영하고, 부지전체 공공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D1-4	방이동 41-8, 9	544.5	공동개발 지정	-	-
	방이동 41-8, 9, 10, 14, 15, 16	1,630.0		공동개발 지정	

■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방이동 41-8,9 : 공동개발 지정 (면적 : 544.5㎡)	방이동 41-8,9,10,14,15,16 : 공동개발 지정(면적 : 1,630.0㎡)	주민제안(방이동 41-8번지 외 5필지 신축)에 의한 공동개발

2.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배치	건축 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1m)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건축 한계선	건축한계선 일부 조정 : 사업부지 건축한계선 2m ⇒ 1m	남/북측 도로 각 1m 확폭에 따른 건축선 폭원축소 (선형변경 없음)	결정도 참조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 차도형)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방이지역 : 1~4m (대상지: 1m/ 차도형)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전면공지	전면공지 폭원조정 : 사업부지 전면공지 2m(차도형) ⇒ 1m(차도형)	남/북측 도로 각 1m 확폭에 따른 전면공지 폭원축소 (선형변경없음)	결정도 참조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방이지역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6. '방이지역 이면부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7.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③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④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가결 사항

■ 다음사항을 반영

- 대상지내 조성되는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은 연접지와 협의하여 일체적으로 조성하여 통행권과 안전성을 확보 할 것
- 시설물 기부채납 산정은 건축허가 시점에서 토지가는 감정평가, 건축비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통해 확정하여 공공시설 기부채납 충족여부를 검토 할 것
- 건축계획(불법주차 방지시설, 공개공지 조성, 상가전면 화단이설 및 오피스텔 출입구 평면 등)은 건축위원회심의 시 심도 깊게 검토하여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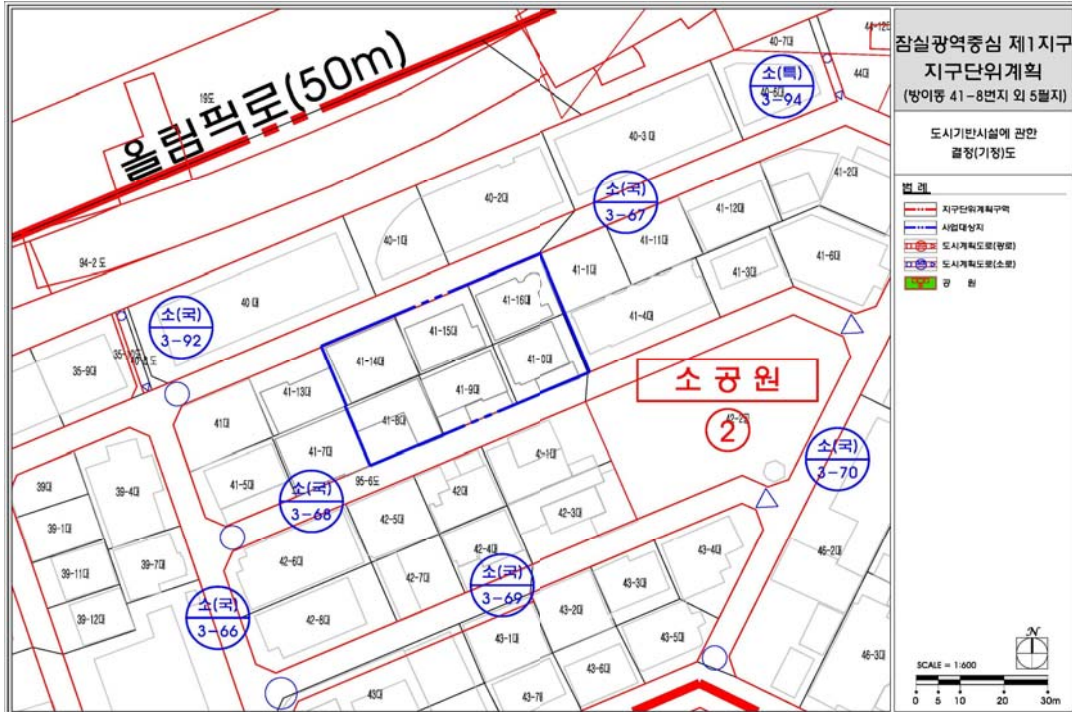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열람장소 :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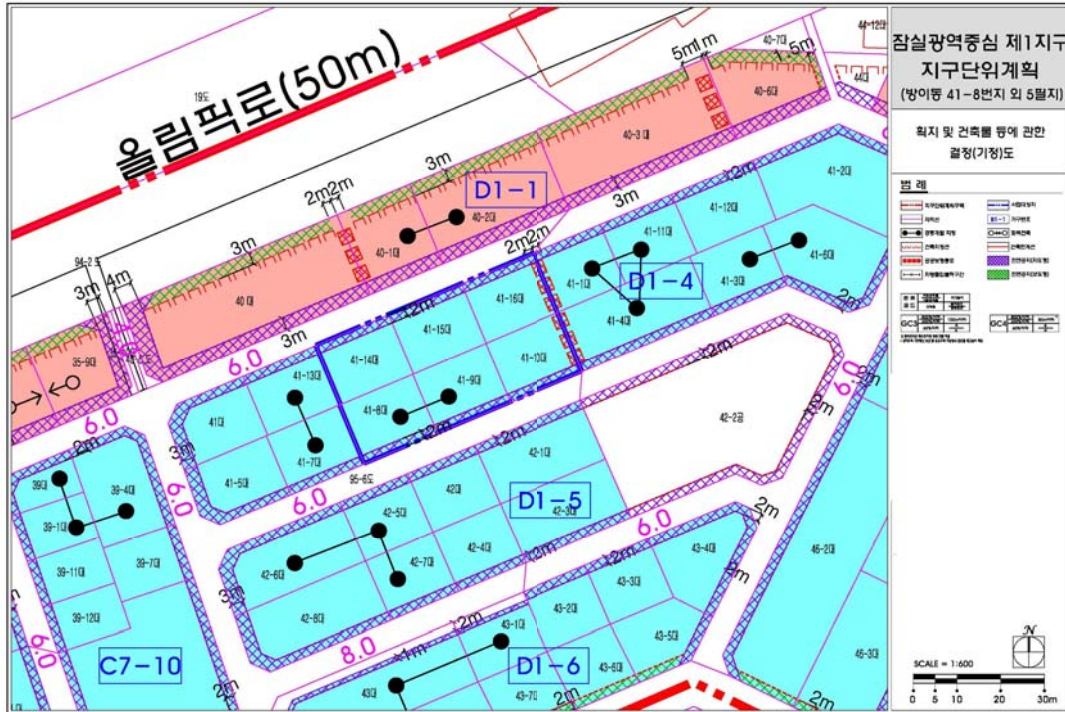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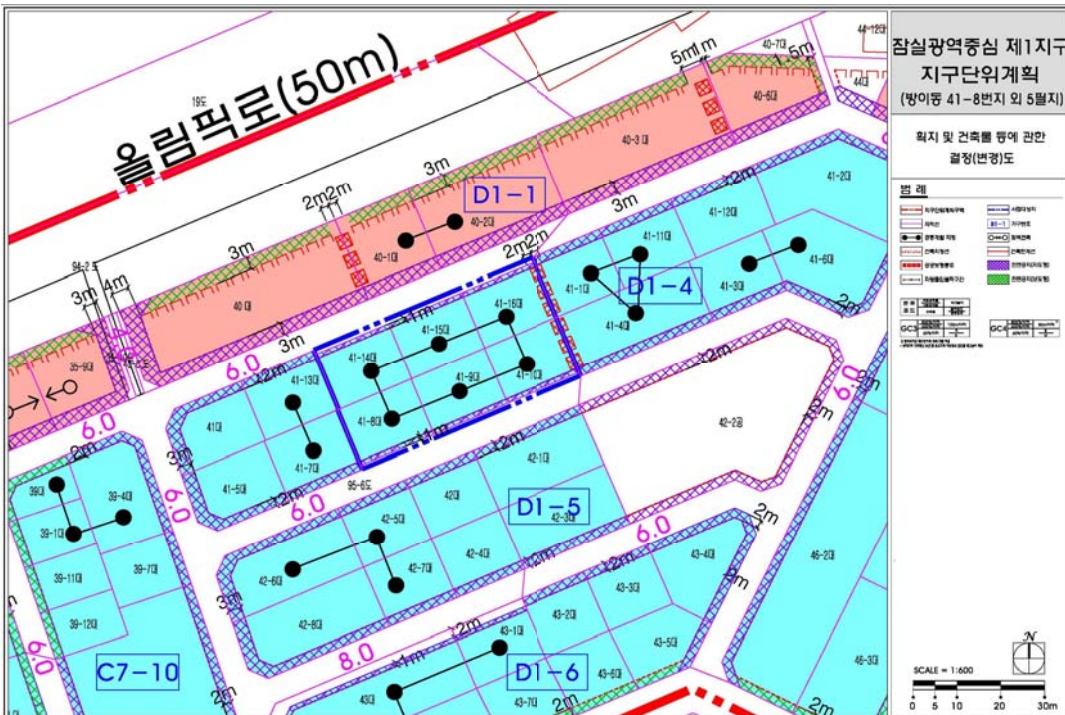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공공청사) 입체적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17-53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42호(2014.4.17.)로 도시관리계획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내 용산구 한강로3가 40-992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건축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99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2) 명 칭 : 용산지구단위계획 공공공지 조성공사

다. 사업 규모 : 공공공지 조성 2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주)서부티엔디
- 2)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20길 83 (한강로3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개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1	한강로3가	40-992	대	200	200	(주)서부티엔디	용산구 청파로20길 83 (한강로3가)	-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 2199-7503)

자.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 성동구청고 제2017-5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4호(2017. 6. 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금호동2가 220-1~222-2」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성 동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사항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220-1~222-2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금호로 확장공사(금호동2가 220-1~222-2)
- 3) 사업의규모: 도로확장 폭19 → 25m, 연장 41m
-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청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12.31.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 7)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 8)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토목과(02-2286-5764)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금호동2가 220-1	대	137.2	42.9	김귀임	성동구 옥수동 539-9				
2	금호동2가 220-2	대	59.5	19.1	이하자	성동구 금호로166 601호				5/9
					조혜영	성동구 금호로166 601호				4/9
3	금호동2가 221-2	대	118.3	40.6	농협은행주식회사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4	금호동2가 222-1	대	232.7	67.0	농협은행주식회사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지상권	
5	금호동2가 222-2	대	59.2	8.1	이승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 106동106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지상권	

별첨 2

연번	소재지 ·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1	금호동2가 220-1	건물(지하)	철근 콘크리트	28.5	김귀임	성동구 옥수동 539-9				
		건물(1층)		33.8						
		건물(2층)		33.8						
		건물(3층)		33.8						
2	금호동2가 220-2	건물(지하)	블럭조, 조적조	21.7	이하자(5/9) 조혜영(4/9)	성동구 금호로166 601호				
		건물(1층)		21.7						
		건물(2층)		21.7						
		건물(3층)		21.7						

연번	소재지 ·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	금호동2가 221-2 외 1필지	건물 (1층)	철근 콘크리트	116.4	농협은행주식회사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금호동2가 221-2, 222-1
		건물 (2층)		116.4						
		건물 (3층)		116.4						
		건물 (4층)		56.9						
		건물 (5층)		8.5						
4	금호동2가 222-2	건물 (1층)	철근 콘크리트	12.5	이승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 106동106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건물 (2층)		12.5						
		건물 (3층)		12.5						
		건물 (4층)		12.5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성북구공고 제2017-779호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분할 및 획지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2013.11.28)로 결정고시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성북동 330-139번지의 필지분할 및 획지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 2241-2774) 및 성북동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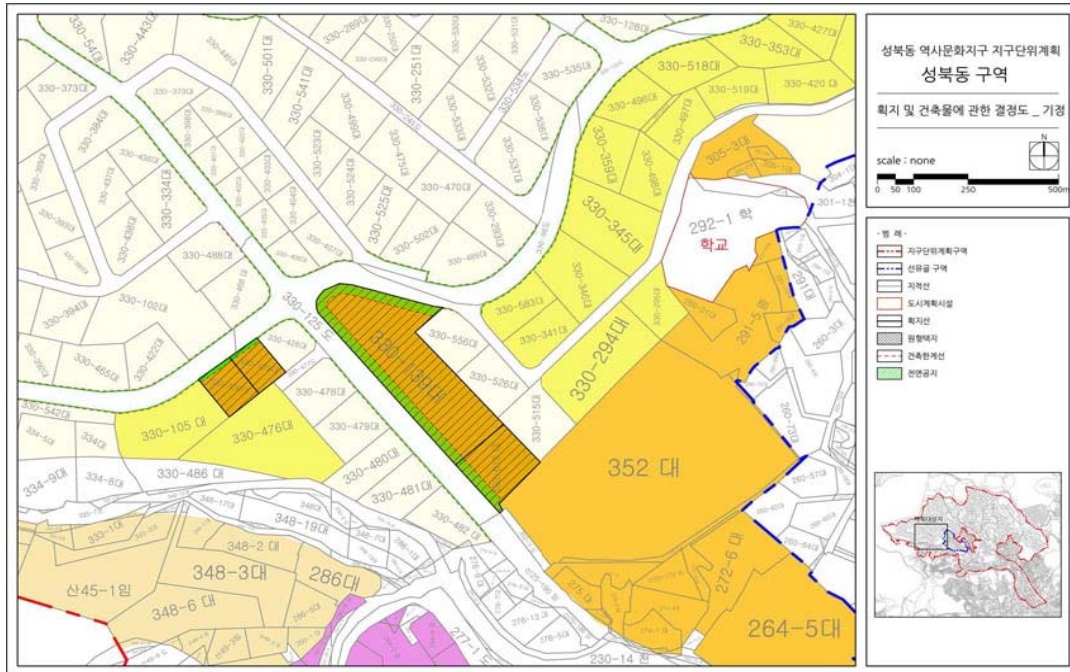
다. 열람내용

1) 필지분할 및 획지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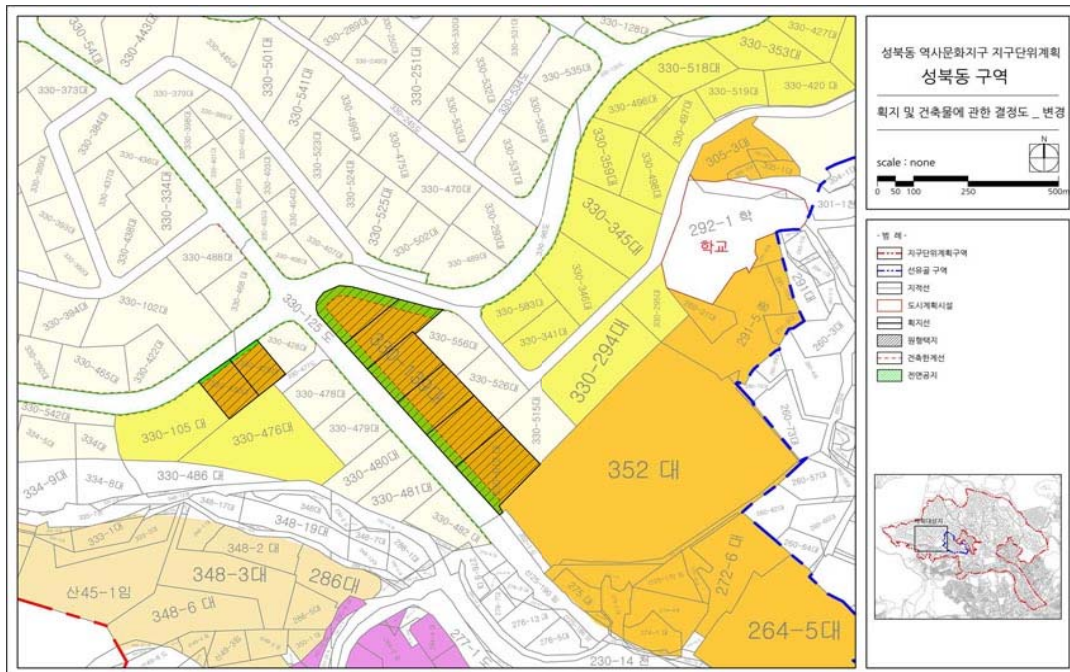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성북동 330-139 : 3,352㎡	성북동 330-139-1 : 660㎡
		성북동 330-139-2 : 712㎡
		성북동 330-139-3 : 660㎡
		성북동 330-139-4 : 660㎡
		성북동 330-139-5 : 660㎡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 전]



[변경 후]



라.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성북구공고 제2017-780호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2013.11.28)로 결정고시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 2241-2774) 및 성북동 주민센터

다. 열람내용

1) 공공공지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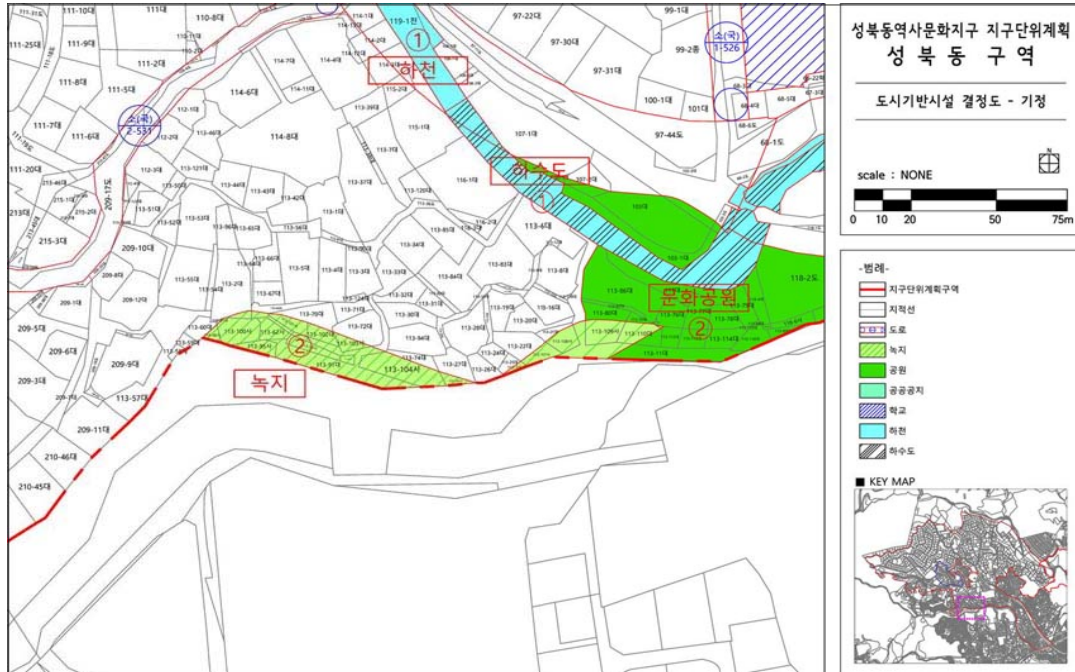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③	공공공지	성북동 113-60 일대	-	증) 57	57	-	한양도성변
신설	④	공공공지	성북동 113-72	-	증) 142	142	-	한양도성변
신설	⑤	공공공지	성북동 113-21 일대	-	증) 482	482	-	한양도성변

2) 결정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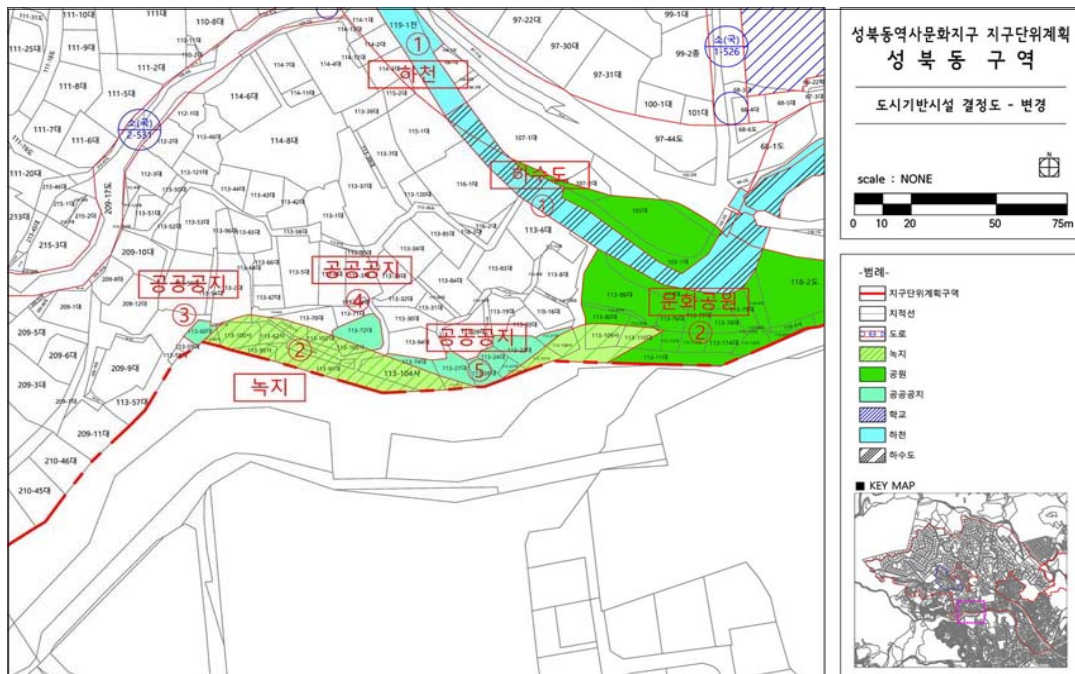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신설	공공공지	신설 57 ㎡ 신설 142 ㎡ 신설 482 ㎡	본 부지는 사적 제10호 한양도성 인접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체계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유적 보호·유지·관리에 기여하며, 한양도성 경관개선과 탐방로에 대한 장기계획을 하기 위하여 급회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3) 도시계획결정도

<변경 전>



<변경 후>



라.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금천구공고 제2017-737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62(1979. 8. 10)호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되고 서울특별시 허가 번호 제170(1980. 5. 19.)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 원부변경 허가를 득하고, 금천구 고시 제2016-78호(2016.10.30.)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여객자동차정류장』 관련 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2차변경)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되지 않거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 명칭 : 범일운수 옹벽 재설치 및 기사대기실 증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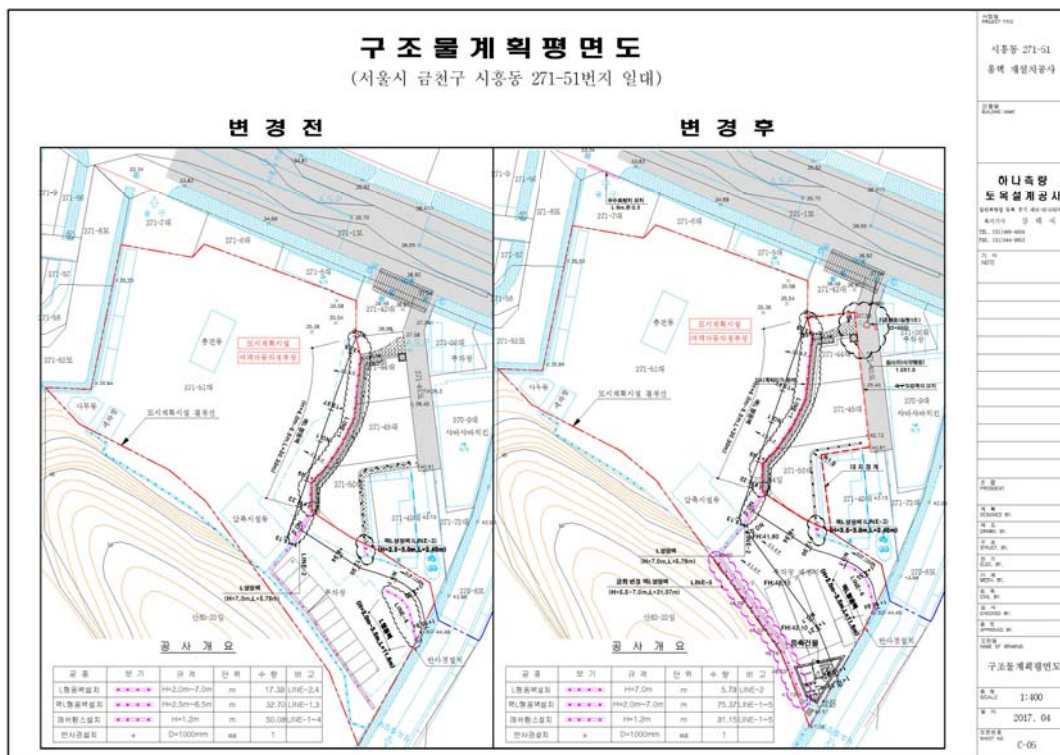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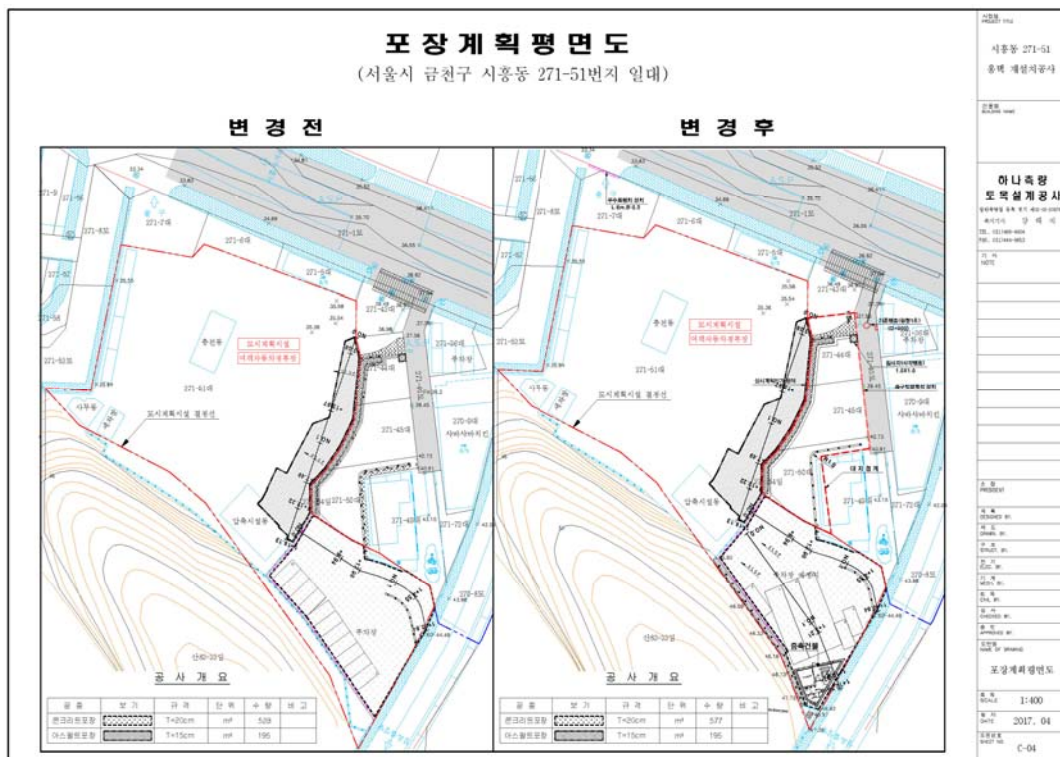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적 : 2,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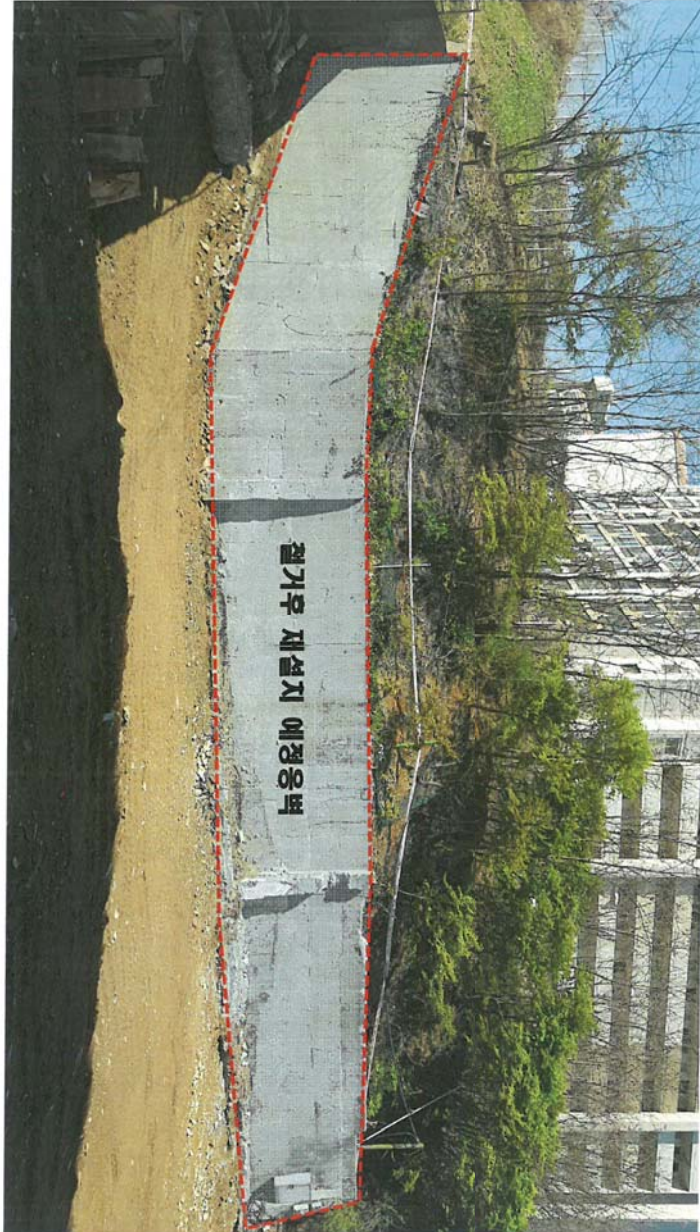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시행	금회시 행	차후시 행		
결정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	
실시계획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2016.10.30	· 옹벽(71m) 철거 · 건물철거(1동) · 주차장 및 정류장 확대
변경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2016.12.9	· 면적 변경없음 · 인접부지 절토로 인한 옹벽높이 변경으로 공작물 전체 면적의 17.5%변경
2차 변경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	· 옹벽 재설치 · 기사 휴게실 증축 · 주차장에 버스 정차 (3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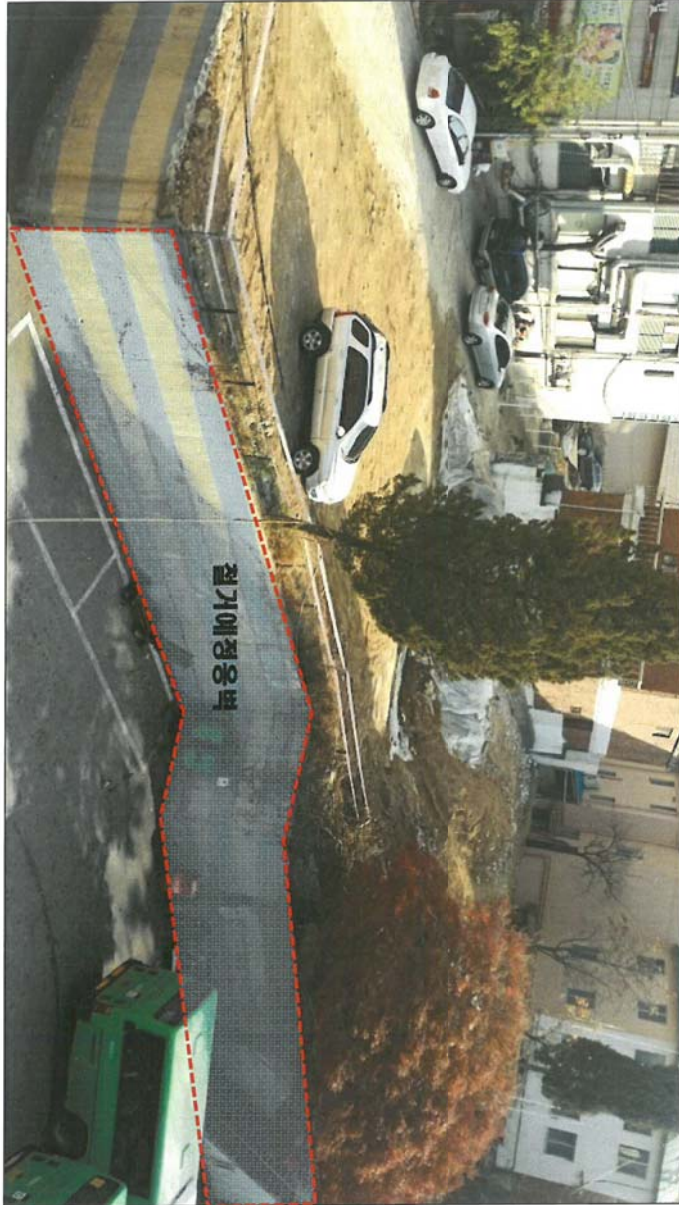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 성명 : 범일운수(주) 대표이사 박도식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 : 2년 이내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
- 아. 사업목적
 - 관리동 인접옹벽의 재해위험성이 높아 철거후 재설치 및 기사대기실 증축
 - 기 허가시 승용차용으로 주차장 허가를 득하였으나 버스의 증차로 인해 승용차의 주차수를 줄이고, 버스(3대)를 정차하고자 함.
-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차. 열람장소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장 사 진



현 장 사 진



현 장 사 진



2. 사 업 계 획 서(변경)

1.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 명 칭 : 용벽 재설치 및 기사대기실 증축공사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2,607m²

3. 사업자 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 성 명 : 범일운수(주) 대표이사 박도식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 : 2년 이내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서류(별첨)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기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해당없음)

7.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해당없음)

8. 사 업 비

- 사업비 : 삼억이천오십오만원정(W 320,550,000)

9. 사업 목적

- 관리동 철거후 임야부 옹벽의 재해위험성이 높아 철거후 재설치 및 기사대기실 증축을 위하여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함

10. 사업의 개요

① 토 공

- 절 토 : 870m^3
- 성 토 : 4m^3
- 옹벽철거 : 103m
- 건물철거 : 1동(지하1층, 지상3층(현재 철거되었음))

② 배 수 공

- 배수로(300 X 300) : 35.1m
- 배수로(200 X 200) : 21.4m
- 우수관(D200mm) : 11.6m

③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T=20cm) : 577m^2
- 아스팔트포장(T=15cm) : 195m^2

④ 구조물공

- 옹벽설치 : 81.15m

⑤ 부대공

- 흙막이(가시설) : 1식
- 반사경설치 : 1ea
- 웬스설치 : 81.15m

3.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사업 추진경위 및 변경사유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62(79. 8. 10)호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2. 서울특별시 허가 번호 제170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 원부변경허가득(80. 5. 19)
3. 당초설계시 인접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이격하여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인접 건축물의 철거 및 정류장의 협소로 인해 옹벽 및 관리동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함
4. 교통행정과-50434(2016. 10. 31)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음
5. 인접부지의 절토로 인한 옹벽높이의 변경으로 공작물 전체 연면적의 17.5% (변경전:293.55m², 변경후:249.76m²)가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함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6-1161호(2016. 11. 17)로 실시계획인가를 공고하였음(2016. 12. 15)
7. 주차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리동 철거후 임야부의 옹벽을 확인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아 이를 철거하고 재설치하고자 함
8. 기 허가시 승용차용으로 주차장 허가를 득하였으나 버스의 증차로 인해 부득이 하게 승용차의 주차수를 줄이고 버스주차구획을 신설하였음
9. 버스기사님들의 복지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사대기실을 증축하고자 함

4. 시 행 조 서(변경)

▣ 결 정 조 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규 모(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시행	금회시행	차후시행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	

▣ 건축물 조서

구 분	건폐율(%)	용적율(%)	층 수	비 고
기정	4.41%	5.03%	최고2층 이하	지상2층
변경	5.594%	7.408%	최고2층 이하	지상2층

5. 건축물 계획 조서(변경)

동 별	층 별	명 칭	사용명칭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시흥CNG충전소 사무동	1층	위험물처리및저장시설	기사대기실	16.35	16.35	
	2층	위험물처리및저장시설	기사대기실	16.35	16.35	
	계			32.70	32.70	
시흥CNG충전소 압축시설동	1층	위험물처리및저장시설	CNG저장소	77.55	77.55	
시흥CNG충전소 충전동	1층	위험물처리및저장시설	충전기	21.00	21.00	
주5동	1층	자동차관련시설	기사대기실	-	30.95	
	2층	자동차관련시설	기사대기실	-	30.95	
합 계				131.25	193.15	
건축면적				114.90	145.8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31.25	193.15	
건 폐 율			$145.85 \div 2,607 \times 100$	4.41%	5.594%	
용 적 률			$193.15 \div 2,607 \times 100$	5.03%	7.408%	

6. 토 지 이 용 계 획 조 서(변경)

구 분	규 격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기 정	금회변경	기 정	금회변경	
건 축 부 지	여객자동차정류장	114.90	145.85	4.41%	5.59%	30.95(증)
정류장 부지		1,907.1	1,809.15	73.15%	69.40%	97.95(감)
주차장 부지	직각주차 : 5.0x2.3 평행주차 : 6.0x2.0 대형주차:14.0x3.25	492.00	559.00	18.87%	21.44%	67.00(증) 기허가주차수:승용15면 변경주차수:10면 승용직각 2면 승용평행 5면 대형주차 3면
통행로 부지		93.00	93.00	3.57%	3.57%	변경없음
계		2,607	2,607	100.0	100.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변경없음)

작성자 : 하나축량토목설계공사 대표 강 태 식

확인자 : 범일운수 주식회사 대표 박 도 식(인)

■ 사업명:옹벽 제설치공사

(단위:㎡)

일 련 번 호	소재 지동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시흥동	271-51	대	2,607	2,607	범일운수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271-5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계				2,607	2,607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변경)

작성자 : 하나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강 태 식(인)

확인자 : 범일운수 주식회사 대표 박 도 식(인)

■ 사업명:범일운수 옹벽 및 관리동 철거공사

(단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수량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구	동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금천구	시흥동	271-51	사무동	철근콘크리트	32.70	범일운수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271-5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증축
				압축시설동	철근콘크리트	77.55						
				충전동	일반철골구조	21.00						
				기사대기실	철근콘크리트	61.90						

9. 재 원 조 달 방 안(변경)

공 중 별	총 사 업 비		재원별	비 고
	물 량	금 액		
계		320,550,000		전액 자체부담
부 지 매 입 비	2,607㎡			범일운수 회사 소유
시 설 비	2,607㎡	320,550,000	회사 시설비	포장, 옹벽, 뢰스

◆ 동작구공고 제2017-63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25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1. 입안사유

- 상도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공공공지로 조성되었으나 상도1동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과 창업지원센터, 영유아일시안심보호센터, 장난감대여점 이전 등을 위해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안)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공공지	동작구 상도동 425	429	감)429	-	2004.4.16.	

3. 공 고 일 : 2017. 06. 22.(목)

4.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630)

6. 관련도서 : 열람장소 비치

7. 기 타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결정 및 지형도면(안)



◆ 송파구공고 제2017-824호

도시관리계획(안:학교) 변경결정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02호('73.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194호('78.5.8)로 결정고시된 송파구 송파동 99-2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잠실여고·일신여상) 부지 중 장기미집행된 송파동 99외 1필지를 학교에서 변경결정(해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송 파 구 청 장

1. 열람기간: '17.6.22 ~ 7.6(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장소: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2991)
3. 변경결정 취지:
 - '78.5.8 학교로 결정 후 40년간 미집행된 사유지로서 해당 교육청의 수용계획이 없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회복
4. 도시관리계획(안:학교)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중고교	송파구 가락동 398번지일대 (송파구 가락동 412-5번지일대)	송파구 송파동 99-2 일대	37,812	감)1,924.5	35,887.5	'73.10.27	잠실여고 일신여상

○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기정면적 오류정정 - 37,214 → 37,812㎡	•면적 착오 정정
	•도시계획시설(학교) 일부 해제 (송파동 99, 99-1) •면적 : 1,924.5㎡	• '78. 5. 8. 시설결정 후 40여년 간 집행계획 없이 방치된 장기미집행 사유지로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로 사유재산권 회복을 도모하고 • 해당 교육청의 학교시설 활용(수용)계획이 없어, 해제입안 신청(' 17.1.13)에 대한 수용결정(' 17.3.3)에 따른 시설 일부 해제임

○ 건축물의 범위 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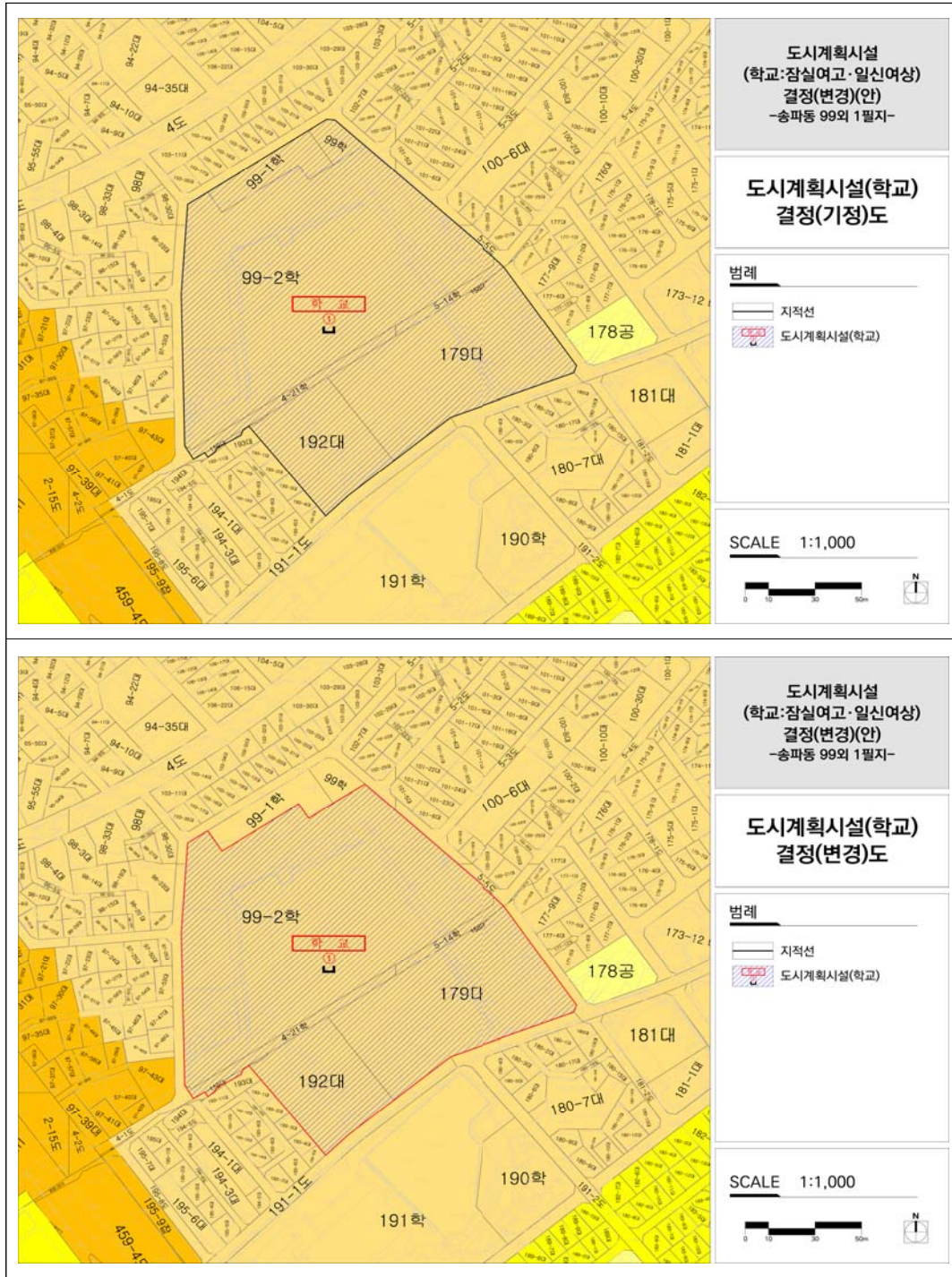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건축제한완화	비고
30%	120%	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2991), 서울시 교육청(☎3999-60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공고문·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도

[잠실여고·일신여상 송파동 99외1필지(1,924.5㎡), 축척: 1/1,000]



◆ 강동구청고 제2017-806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강동구고시 제2017-91호(2017. 6. 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내용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사업에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암사동 495-72호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암사 도시재생엔커시설 조성사업

라.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285.9m²-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48m²

마.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42)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및 건축물 조서

- ☐ 사업명 : 암사 도시재생엔지니어링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 토지현황 : 1필지

연번	소재지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인	
1	암사동 495-72	285.9	285.9	대	강동구청					

○ 건축물현황 : 1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인	
1	암사동 495-72	점포 (부동산중개소)	콘크리트	점포 (연지부동산)	강동구청		이주영	강동구 암사동 4**-3*	세입자 (점포)	
		점포 (학원)	콘크리트	점포 (숙명음악학원)			백효정	강동구 천호3동 ***-***호 ***아파트 *01호	세입자 (점포)	

○ 영업권 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호	실제이용상황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1	암사동 495-72	영업권	연지부동산	점포 (부동산중개소)	이주영	강동구 암사동 4**-3*	
2		영업권	숙명음악학원	점포 (학원)	백효정	강동구 천호3동 ***-***호 ***아파트 *01호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4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서울시계 내 한강(양화대교)	선박 2척 (기선1, 부선1)	양화 입수로 부분정비	2017.06.14 ~ 2017.06.18	2017. 6.1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한강대교)	선박 2척	한강대교 보수공사	2017.06.19.~ 2017.06.27.	2017. 6.1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4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이에이치알앤씨(주)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10번길	서울시계 내 한강 (잠실대교 ~ 김포대교)	선박 1척 (고무보트)	한강 내 수질조사를 위한 선박운항	2017.6.21.~ 2017.6.30.	2017. 6.1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3척 (부선 3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06.19. ~ 2017.07.02.	2017. 6.16.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1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7길 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번지
 - 면 적 : 1,0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송전선로 철탑 설치(송전시설물 유지관리)”
 - 내 역 :
 - 송전선로 철탑 2주
5. 점용기간 : <당초> 2012.5.27.~2017.5.26.
 <변경> 2017.5.27.~2022.5.2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15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9-2번지

- 면 적 : 82.62㎡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연결 보행로 등 설치
 - 내 역 :
 - 태양광 그늘막 설치 6조
-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2022.6.13.(허가일로부터 90일)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